

2020 4.15 총선

사회복지계 요구 공약집



전국가정위탁지원센터협의회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전국노숙인시설협회
전국여성폭력방지상담원처우개선연대
한국노인보호전문기관협의회
한국다문화가족건강가정지원센터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전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연합회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사회복지국가책임제실현을위한단체연대

목 차

사회복지국가책임제실현을위한단체연대 소개	1
회원기관 현황	3
2020 4.15 총선 정책협약 요구공약	5
공약 1. OECD 국가 평균 사회복지예산 확보	7
공약 2. 사회복지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9
공약 3. 사회복지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준 급여현실화	10
공약 4. 사회복지사업 민관협치 강화	12
01 아동	15
공약 1. 아동학대 대응 실질적인 국가책임제 도입	17
공약 2. 지역아동센터 인력 추가 배치	19
공약 3. 그룹홈 아동을 위한 자립전담요원 배치	21
공약 4. 가정위탁지원센터 증설 필요	22
공약 5.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현실화	23
02 이민·다문화	25
공약 1. 장기적인 이민·다문화정책의 청사진과 로드맵 작성 추진	27
공약 2. 이주배경아동청소년 지원체계 강화	29
공약 3. 다문화가족서비스 전달체계 정비	30
공약 4. 재한동포의 포용정책 강화	32
공약 5. 이주민의 인권기능 확대와 사회통합 강화	33
03 장애인	35
공약 1. 장애인거주시설 정책 개편	37
공약 2. 소규모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현실화	38
공약 3.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지원 강화	39
공약 4. 중증장애인 체계적인 직업재활 및 직업서비스 지원을 위한 기반 마련	40
공약 5. 시·도별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격차 해소	42
공약 6.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최저임금 보전	44
공약 7. 장애등급제의 실효적 폐지 및 커뮤니티케어 추진에 따른 사례관리 전담인력 확충	45

공약 8. 장애인활동지원 제도개선을 위한 중장기로드맵 수립	47
공약 9.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확충	48
공약 10. 장애인의 서비스 필요 정도에 맞는 종사자 배치	50
공약 11.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명칭 개정(장애인복지법 개정)	53
공약 12.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인력충원 및 인건비 현실화	55
공약 13.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 전달체계 개선	57
공약 14.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확대	59
공약 15. 정신재활시설 활성화	61
04 노인	63
공약 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개선 및 수가 현실화	65
공약 2.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를 사회복지임금체계와 동일	67
공약 3.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인력배치기준 현실화	68
공약 4. 농어촌지역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에게 본인부담금 경감제 도입	70
공약 5. 노인복지법 전부개정 추진	71
공약 6. 지역 맞춤형 노인복지체계 구축	72
공약 7.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을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지원법 개정	73
05 노숙인	75
공약 1. 노숙인 국고지원사업 확대	77
공약 2. 중앙노숙인종합지원센터 설립	78
공약 3. '노숙인'에서 '홈리스'로 명칭변경	79
공약 4. 노숙인시설 체계개선 및 운영비 현실화	80
06 지역자활	81
공약 1.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83
공약 2. 기초자치단체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확대	85
공약 3. 저소득층 자립 강화를 위한 기초자치단체 자활지원 조례제정	86
07 사회복지 일반	87
공약 1. 사회복지 전문성 유지를 위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의무대상 확대	89
공약 2.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 전면 재검토	92
공약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규정 법제화	94
공약 4. 사회복지사 등의 임금심의위원회 설치	95

사회복지국가책임제실현을위한단체연대 소개

□ 개요

사회복지국가책임제실현을위한단체연대(‘이하 복지국가실현연대’)는 2019사회복지정책대회의 후속작업으로 진행되는 공식 연대단체로서 사회복지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 2020년 총선과 2022년 대선에 중점적으로 정책반영을 위해 활동

□ 참여단체 : 26개 단체

전국가정위탁지원센터협의회, 전국노숙인시설협회, 전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연합회,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 전국여성폭력방지상담원처우개선연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한국노인보호전문기관협의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다문화가족건강가정지원센터협회,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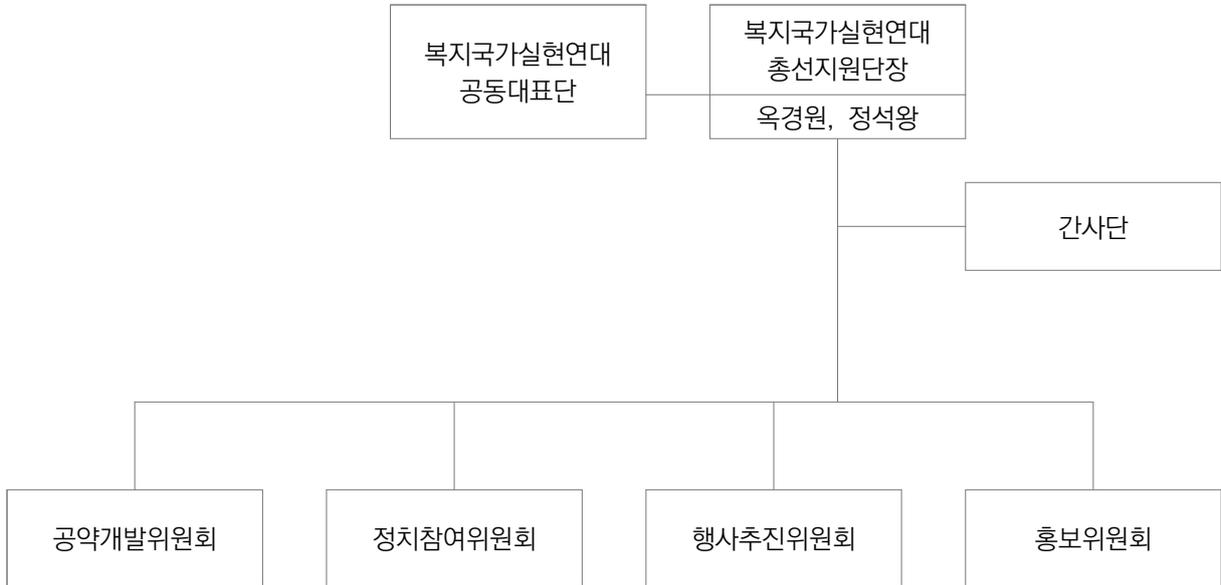
- 사회복지 국가책임제 실현
- 2020년 총선 및 2022년 대선에 연대의 요구정책 반영

□ 단체 규모

- 단체 수 : 26개 단체
- 단체에 해당 된 기관수 : 약 11,000여개소
- 회원종사자수 : 1,230,000 여명

■ 총선지원단 구성

[조직도]



[역할 및 활동]

- 공동단장 : 4.15 총선 공약화 추진, 각 당 연계, 대내외 총선관련 활동 총괄
- 공약개발위원회 : 사회복지계 현안 정책공약개발 및 제시
- 정치참여위원회 : 사회복지사 정치참여 제도화를 위한 기준 마련 및 비례대표 추천
- 행사추진위원회 : 협약식 및 공약발표회(정책토론회) 추진
- 홍보위원회 : 보도자료, 인터뷰, 대내외 홍보
- 간사단 : 총선 준비단의 사무행정(공문수발, 연락, 자료편집 외)

회원기관 현황

연번	구분	성명	소속	비고
1	공동대표	김기남	전국가정위탁지원센터협의회	
2	공동대표	정충일	전국노숙인시설협회	
3	공동대표	최현	전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연합회	
4	공동대표	이동건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	
5	공동대표	노현진	전국여성폭력방지상담원처우개선연대	
6	상임대표	남세도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7	공동대표	이현준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8	공동대표	류성봉	한국노인보호전문기관협의회	
9	공동대표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중앙회	
10	공동대표	전용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11	공동대표	김도율	한국다문화가족건강가정지원센터협회	
12	상임대표	강선경	한국사회복지공제회	
13	상임대표	남국희	한국사회복지관협회	
14	상임대표	오승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15	공동대표	김정호	한국시니어클럽협회	
16	상임대표	신정찬	한국아동복지협회	
17	공동대표	방영탁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18	상임대표	장순옥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19	공동대표	정석왕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20	공동대표	황유신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21	공동대표	김행란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22	공동대표	김현훈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23	공동대표	이승부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	
24	공동대표	장명찬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25	공동대표	옥경원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26	공동대표	심춘덕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2020 4.15 총선

정책협약 요구공약

1. OECD 국가 평균 사회복지예산 확보
2. 사회복지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3. 사회복지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준
급여현실화
4. 사회복지사업 민관협치 강화

전 국가정위탁지원센터협의회
전국노숙인시설협회
전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연합회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
전국여성폭력방지상담원처우개선연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한국노인보호전문기관협의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다문화가족건강가정지원센터협회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2020 4.15 총선
사회복지계 요구
공약집

1 OECD 국가 평균 사회복지예산 확보

구 분	내 용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은 2015년 GDP대비 사회복지지출이 11.2%로 OECD 평균 (22.0%) 절반 수준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은 시장 중심의 복지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미국(24.6%)보다도 낮고, 우리와 유사한 사회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22.4%)의 절반 수준임(e-나라지표, 2019) ● 한국의 2015년 사회복지지출(11.2%)은 소득대체지출, 빈곤완화 지출, 보건의료지출, 사회서비스지출로 구성되어 있으나 OECD 주요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편임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대체지출 : 노령, 유족, 실업 관련 연금(국민연금 등) 및 수당 지출 ◦ 빈곤완화지출 : 주거, 가족부양, 근로 무능력 관련 수당 및 기타 사회복지정책 관련 지출 ◦ 보건의료지출 : 보건의료 관련 모든 공공재원 및 법정 민간 재원 지출 ◦ 사회서비스지출 : 아동 등에 대한 각종 돌봄 서비스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관련 지출 </div>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DP(국내총생산) 대비 OECD 최하위권이라는 불명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 비중은 10.4%로 2015년 10.1%에 비해 다소 확대되었으나 통계가 공개된 OECD 회원국 30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함(2016, 보건복지부) - 2018년 우리나라 GDP 순위는 12위로 공공사회지출 비중 또한 11.1%로 전년 대비 0.5% 증가하는 등 공공사회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지출은 OECD 37개 회원국 중 한 단계 상승한 35위에 위치하고 있어 여전히 OECD 최하위권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음(2018, 보건복지부) ● 사회복지지출 증가에 대응하는 복지재원 확보 불충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총지출예산은 72.4조 원으로 전년

구 분	내 용
	<p>도 63.2조 원 대비 9.2조 원(14.6%) 증가한 부분과 보건복지부 총지출예산 72.4조 원 중 노인예산(26.1%), 취약계층지원 예산(22.4%), 아동·보육예산(21.6%)이 증가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낮은 급여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양적 확대, 광범위한 비수급 빈곤층 양산 등의 문제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어 사회안전망 확충, 소득재분배와 삶의 질 개선 등 전반적인 측면에서의 사회복지지출 증가가 요구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부담 확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출산·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인구구조와 노동시장 및 사회 환경의 변화로 인해 복지예산의 확대는 증가할 수밖에 없으므로 세원 확대 및 세수확충을 통한 복지재원 확보와 국민부담 확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공약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ECD 평균(22%)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이 절반에 이르고 있어 GDP(국내총생산) 대비 OECD 최하위권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 OECD 국가 평균 사회복지예산 확보를 위한 중장기로드맵 수립 ● 저출산·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복지예산 확대는 불가피하므로 국민부담 확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세원 확대 및 세수확충방안 마련

2 사회복지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구 분	내 용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2.28.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고, 연장근로의 한도(1주 12시간)가 적용되지 않는 특례업종을 축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의결되어 국회 통과 ● 근로기준법 부칙에서 특례조항 폐지에 따른 경과규정을 두어, 종사자가 300인 이상인 사업체는 2018년 7월부터 시행하고 종사자 50인 미만은 2021년 7월부터 적용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시설 등 서비스 인력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시설의 경우 24시간의 서비스가 제공되며 다수의 시설이 2교대로 운영되고 있어 아동, 장애인, 노숙인, 노인양로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의 경우 3교대 근무를 위한 인력증원에 대해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예산 및 인력에 대한 구체적 해결방안 미제시 ● 특례업종 폐지에 따른 시간외 수당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시설에서 시간외 수당이 도입될 당시 인건비 보전의 수단도 내포하고 있어 연장근로시간 감소로 인한 임금감소에 대한 우려 발생 ● 사회복지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력배치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아동센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역자활센터, 시니어클럽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업무량, 업무강도,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인력 배치 기준 및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배치 기준 미준수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간 근로환경의 편차 심화
공약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시설(아동공동생활가정, 아동양육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거주시설, 노인양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등) 3교대 근무형태 전환을 위한 단계적 로드맵 수립 ● 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업무강도 증가, 인건비 감소 등을 고려한 예산 및 인력지원 체계 마련 ● 법과 제도에 의한 합리적인 적정인력 기준 마련과 인력지원 확대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실행

3 사회복지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준 급여현실화

구 분	내 용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명시한 「사회복지사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약칭 ‘사회복지사법’) 2011.3.30. 제정 및 시행 ● 서울지역의 경우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와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를 중심으로 2010년부터 단일임금체계로의 임금체계 개혁을 서울시에 요구 및 연도별 실행계획에 의한 추진 ● 현재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수준의 임금을 지원받고 있지 못한 아동그룹홈, 지역아동센터, 지역자활센터 등 6개 시설뿐 아니라 여성가족부 소관 복지사업에 대한 종사자간 분야별 임금격차 심화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 분야별 임금격차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부가 임금가이드라인을 매년 발표하고 17개 시도에 준수토록 요구하고 있으나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6개 시도만 준수하고 있는 실정 - 장기요양, 소규모시설, 여성가족부 소관 사업 등 사회복지사 임금 가이드라인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사회복지종사자 증가 - 국비사업으로 전환된 노인양로시설 등에 대한 인건비 책정기준이 보건복지부 임금가이드라인의 3년 전 기준에 준하여 예산을 책정하는 등 비현실적인 수준에 있는 등 사회복지시설 간 편차 심화 ● 형식적 법률, 조례, 실태조사의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사법’과 시도별 조례가 입법취지에 맞게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3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조사하게 되어 있는 사회복지시설 임금실태조사 또한 형식적으로 시행하거나 시행하지 않는 지자체가 다수임 ● 비분권 교부시설인 아동그룹홈, 지역아동센터, 지역자활센터 등 6개 분야 시설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구 분	내 용
	있지 못함.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동일 분야 사회복지사간 임금격차는 평등권 침해라고 개선을 권고함
공약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정확한 실태조사에 의한 임금 가이드라인 개선 ●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미적용 시설 6개 분야 종사자에 대한 가이드라인 적용을 통해 처우 개선 추진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근거하여 전체 사회복지 이용시설, 생활시설의 동일한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및 지역별, 분야별 사회복지종사자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준 급여현실화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의 복지정책(전국 최초 지역자활센터, 여성인권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비분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한 보수체계 개편 확정, 보건복지여성국장 등 36개 직위 개방형 지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시범사업 실시, 사회복지 다목적 종합서비스 센터 조성·운영 추진, 사회복지센터내 사회복지종사자 전용 교육장 설치 등) 벤치마킹을 통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도모 ● 서울시의 복지정책(사회복지시설 직원 복지포인트 지급, 장기근속 휴가제 실시, 국내외연수사업 등) 벤치마킹을 통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도모

4 사회복지사업 민관협치 강화

구 분	내 용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는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정의와 관련된 법률을 명시하고 있으며, 각각의 법률에서 명시된 사회복지시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려면 해당 시설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 ●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또한 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으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곳이 적음으로 인해 사회복지법인 제도를 만들고 위탁운영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행정지도하는 형태로 관리하고 있음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사업 제도개선 민관협치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2018년도에 사회복지법인·시설 제도개선 TF 구성을 통해 몇 차례의 현장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쳤으나 사회복지시설 상호변경은 사회복지현장에 파장이 큰 제도개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연구수행, 「행정절차법」 및 「행정규제기본법」 등을 비롯한 제반 법률과의 상충문제 등의 깊이 있는 분석이 선행되지 않음 - 사회복지 현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제도개선 사항은 필히 사회복지현장과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공청회의 절차가 진행되어야 했으나 이러한 절차가 생략됨으로 인해 민관협치가 미흡한 상황에서의 제도시행에 따른 사회복지 현장 피해 초래 ● 사회복지시설 대외적 신용도 하락 및 제반 법률 위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이용자 소득지원과 관련된 수익사업을 하는 대표적인 기관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정신재활시설, 시니어클럽, 자활사업 등의 경우 상호 변경에 따른 대외적 신용도 하락 및 수익감소 초래 -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자 중심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있어 「국세기본법」, 「행정절차법」, 「행정규제기본

구 분	내 용
	<p>법],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등 제반 법률과의 상충 사항 발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쟁 방식 평가제로 인한 민간조직 연대 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공급기준 대비 규제기준 과다하고 줄 세우기로 전락한 주기적 평가제도 - 평가시마다 업무 마비와 전문 인력 이동, 위탁 변경 뒤 고용승계 문제 및 지역주민 피해
공약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계의 파장이 큰 사회복지사업 관련 제도개선 사항은 중장기적 로드맵 수립을 통한 추진 ● 대한민국 사회복지서비스의 근간이 되어온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 인정,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공공성을 가지고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다영역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강화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제도개선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상충되는 사항에 대한 검토를 통한 제도개선 수행 ●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관리·감독의 지침서인 2020 개정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전면폐지 ● 시설 서열화 방식 평가를 민관협치 및 운영 자율성 확대 방식으로 혁신

01

공약

아동

1. 아동학대 대응 실질적인 국가책임제 도입
2. 지역아동센터 인력 추가 배치
3. 그룹홈 아동을 위한 자립전담요원 배치
4. 가정위탁지원센터 증설 필요
5.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현실화

전 국가정위탁지원센터협의회
전국노숙인시설협회
전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연합회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
전국여성폭력방지상담원처우개선연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한국노인보호전문기관협의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다문화가족건강가정지원센터협회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1 아동학대 대응 실질적인 국가책임제 도입

구 분	내 용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보조금 재원이 법무부 범죄피해자 보호 기금으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5장 46조에 근거 아동복지 시설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보통 아동복지시설처럼 보건복지부 일반회계에 포함되지 않고 법무부 범죄피해자 보호 기금에서 출원하는 실정임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평균 4곳 시군구 관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감, 2019년 기준 전국 226개 시군구 4만여 건에 달하는 아동학대 신고접수를 고작 66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모두 맡아 처리 - 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3~4개 정도의 시군구를 관할하고 있음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예산의 국가 책임성 재원 안정성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 대응 및 예방업무는 2019년 포용국가 아동정책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그 중요성이 매우 커 국가책임제로 전환하고 있음에도 지원예산은 아직도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기금에서 출원하고 있음 - 정부정책이 국가책임제로 옮겨 가면서도 예산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이율배반적인 결과를 초래 ● 아동학대 대응업무 현장의 각종 문제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의 30% 이상을 민간이 부담해야 하는 형태로 감당 가능한 시설과 감당 불가능한 시설간 임금격차가 심하고 동일업종간 위화감을 조성하며 이직율을 심화시켜 아동학대 대응업무의 전문성을 위축시키는 결과 초래 - 기금이 가지는 한계로 최소한의 불가인상율에 따른 예산 인상도 없이 사업비 운영비 등은 매년 동결로 아동학대 예방 및 교육 등에 선도적인 대응 불가능 ● 아동학대 사망사건 예방에 허점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안전 모니터링 이동거리만 3시간이 넘게 걸리는 현실에서

구 분	내 용
	<p>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없는 업무 환경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 인천 아동학대 사망사건에서 보듯이 아동 사망사건의 대부분이 사례관리 단계에서 발생하는 현실에서 접근성이 담보된 체계구축이 절실
공약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 대응업무 관련 국가 보조금 일반회계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맞는 예산체계 구축을 위해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전환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시군구마다 확충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구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로 지자체마다 아동학대 대응업무의 책임성 완성하고 촘촘한 아동의 아전망 구축으로 선진 아동학대 대응체계 마련

2 지역아동센터 인력 추가 배치

구 분	내 용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아동 돌봄을 위해 주 5일 기준 시설장 1일 9.5시간, 생활복지사 9.1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주 5일 수업에 따른 토요일운영 등 주말 운영을 감안하면 실제 근로시간은 주 5일 이상, 일 10시간을 초과 - 시설장과 생활복지사들은 주로 방과 후 돌봄과 생활지도, 학습지도, 급식지도, 장보기, 행정업무, 아동 관찰 및 상담, 학부모 상담 및 부모교육,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연계와 각종 프로그램 운영(보호, 교육, 정서지원, 문화)과 평가, 차량 운행(1~3시간), 후원자 발굴 과 관리, 자원봉사자 발굴과 관리, 파견인력 수퍼비전, 3년주기 평가와 연 1~2회의 지자체 점검 및 위생점검, 개별아동관리 및 수준별 교육과 퇴소 아동 관리, 장애 아동이나 다문화 외 다양한 환경의 다양한 아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 ● 2007년 2,700명으로 시작된 아동복지교사 파견 사업은 초기 지역아동센터 전담 인력 파견으로 인력충원 및 아동복지서비스 확대에 기여하였지만, 현재는 전체 3,500명 중 267명은 드림스타트 및 지자체 보조 인력으로 파견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체 지역아동센터 2개소 이상 당 1인을 연계하여 파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노무관리는 지자체에 귀속되어 돌봄 관련 업무협조가 불가하여 UN에서 정한 비준국가로서 ‘아동최우선주의’의 원칙에 따라 파견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교육을 저소득층 일자리로 메꾸는 실정 - 단시간 근로와 연계 파견된 형태는 특수 상황에 놓여 있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과의 관계 형성으로 아동복지의 취지와는 걸맞지 않으며 서비스의 질적 평가에도 저평가 되어 사업 전환 속고 필요 ● 1일 차량 운행시간이 1~3시간으로 아동들이 지역아동센터에 남아 있어도 차량을 1~3회 운영해야 하므로 종사자 1명이 나머지 아동들을 돌봐야 하거나 동승자가 없어 늘 사고의 위험성에 노

구 분	내 용
	<p>출되어 있으며 차량 동승법과는 무관하게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의 사망사고와 안전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야 하는 문제이며 예산 문제로 배제시키고 있는 상황임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도한 근무시간과 업무량 및 다수에 돌봄 아동 관리에 따라 기존 종사자에 소진과 잦은 이직에 정상적인 센터 운영 어려움 - 기존 인력 배치현황에 따르면 아동인권보장을 위한 아동방임 및 학대 등 사건·사고의 지킴이 역할 강화 및 아동·청소년들에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지역아동센터에 기본적 역할 수행 어려움 ● 지속적인 인력난은 지역아동센터 안정적 운영(행정인력부족)을 저해하고 더욱이 차량동승법(차량운행 시)등 민식이 법이 통과된 후로 아동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예방적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노력필요
공약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사자 1인 추가 배치 증원 또는 아동복지교사 파견에서 법정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로에 전환 요구 - [1안] 지역아동센터 인력배치기준[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11] 조정을 위해 개정하여 1인 사무원 증원함 - [2안] 아동복지교사사업 전환(안)으로 아동복지교사를 상근 종사자로 추가 배치하여 인사노무 권한을 지역아동센터에 일임하도록 함 - [3안] 차량동승자 지원을 겸하여 인력 배치하여 근본적인 인력난을 해소해야 함

3 그룹홈 아동을 위한 자립전담요원 배치

구 분	내 용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그룹홈 전담요원 배치 0명 - 아동그룹홈(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의거 아동자립전담요원 배치기준에 따라 배치가 필요하나, 현재 자립요원이 단 한명도 배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전국 아동자립전담요원의 배치상황 (2018년 기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양육시설</th> <th>가정위탁</th> <th>그룹홈</th> </tr> </thead> <tbody> <tr> <td>자립지원 요원 수</td> <td>234</td> <td>18명 (중앙 1, 지역 17)</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양육시설	가정위탁	그룹홈	자립지원 요원 수	234	18명 (중앙 1, 지역 17)	-
구분	양육시설	가정위탁	그룹홈						
자립지원 요원 수	234	18명 (중앙 1, 지역 17)	-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그룹홈(공동생활가정)에서 퇴소한 아동들도 자립을 위한 주거, 생활, 의료지원이 이루어져야하고, 특성에 맞는 자립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 								
공약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그룹홈(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수를 감안하여 최소 40명(중앙 4명, 지역 36명)의 자립전담요원 배치(지역별 배치기준 아동 30명 이상 요원 1명 배치, 아동 100명 초과 시 1명 추가) 								

4 가정위탁지원센터 증설 필요

구 분	내 용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위탁지원센터 인프라 확충 필요 - 시군구 단위 가정위탁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근거 마련(2012.8월)에도 2003년 이후 17개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만 유지(경기, 2개) - 17개 광역 시도에 국한된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 설치로 지역간 업무량 편차 심화 * 상담원 1인당 38명(제주) ~ 최대 202명(경기), 평균 106명, 자립전담요원 1명당 15세 이상 아동 842명 담당 * 아동 400명까지 상담원 6명, 200명 단위로 1명 추가. 15세 이상 자립전담요원 100명당 1명 배치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8]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내 1개소 설치에 따라 지리적 접근성 제약으로 적정사례 관리 곤란, 위탁가정 및 친가정 지원서비스 이용불편 등 최적의 서비스 제약 - 상담원 1인당 평균 106명 사례관리, 자립전담요원 1명당 평균 842명 자립지원 - 상담원 등 종사자 배치기준 미준수로 센터 업무 과중, 사례관리지원서비스 질적 저하 초래
공약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단위 2개 이상 가정위탁지원센터 확충 - 위탁아동, 가정의 지역센터 접근성 개선 및 지역간 서비스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 추가 설치 필요

5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현실화

구 분	내 용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위탁시 양육보조금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위탁시 양육보조금 권고기준은 2018년 현재 월20만원임. 그러나 양육보조금이 권고사항으로 되어있어 각 지자체 마다 차등지원(12만원 ~ 20만원)하고 있는 상황임. - 또한 양육보조금을 아동의 연령이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전 연령의 아동들에게 동일하게로 지급함에 따라 아동의 성장에 따른 소요비용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한 양육보조금 및 초기 정착금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20만원으로 권고하고 있는 양육보조금 권고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하며 아동연령별 차등지원이 필요함. 아동양육보조금 연령별 차등지급 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0 ~ 5세 : 30만원, 6 ~ 13세 : 40만원, 14 ~ 17세 : 50만원등 * (2014년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 기준) 월평균 양육비용 76~111만원(가구소득 300만원대/월 구간)소요 - 위탁아동이 위탁가정에 배치시 초기에 필요한 양육물품 구입으로 인한 위탁가정의 경제적 부담 증가. 특히 영유아의 경우 육아용품 구입으로 인한 부담감 상승으로 가정위탁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됨
공약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현실화 및 초기 정착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의 연령이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일률적 양육보조금 지급이나 초기정착금 부재로 인해 가정위탁제도 활성화를 저해

02

공약

이민·다문화

1. 장기적인 이민·다문화정책의 청사진과 로드맵 작성 추진
2. 이주배경아동청소년 지원체계 강화
3. 다문화가족서비스 전달체계 정비
4. 재한동포의 포용정책 강화
5. 이주민의 인권기능 확대와 사회통합 강화

전 국가정위탁지원센터협의회
전국노숙인시설협회
전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연합회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
전국여성폭력방지상담원처우개선연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한국노인보호전문기관협의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다문화가족건강가정지원센터협회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1 장기적인 이민·다문화정책의 청사진과 로드맵 작성 추진

구 분	내 용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은 체류외국인 250만 명(6.6%, 2019.12.31.)의 이민·다문화 사회를 맞이하였고, 이민자의 유입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 지속되는 저출산·고령화에 국가의 인구 문제 해결 및 경제발전을 위해 대체이민이 점차 요구되어 진다. 대체이민으로 혈통·언어·문화 측면에서 국민과 유사성이 많은 외국적 동포를 우선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한국사회에 기여할 역량을 가진 우수 외국인이민자들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것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순환인력 개념의 외국인노동자정책, 국가경쟁력을 위한 전문 외국인력 확보정책, 유학생 정책, 난민정책, 결혼이민자 중심의 다문화가족정책 등 다양한 이민·다문화정책이 각각의 부처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다문화·이주민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국고귀속금이 매년 상당하나 그들에게 주어지는 서비스는 전적으로 국가재정운영에서 이루어지는 형태이어서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하는 사회통합기금 마련이 절실함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동안의 이민·다문화정책은 특정 사건 혹은 사안에 따른 단기적 대응과 그것의 축적된 결과이고 정책은 분절화 되어 있음 ● 이민자 유입의 확대와 다양한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중장기적인 이민·다문화정책이 없음 ● 정부의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에는 2022년까지 생애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지만, 이주민이 정책대상에 언급되지 않고 있음 ● 국가의 인구·경제·안보 등 미래를 위해서는 종합적으로 이민·다문화정책이 필요하나 국가 재정의 매우 작은 부분 정책으로 이루어져 있음 ● 다양한 분야의 이민·다문화정책이 국무총리실 산하 위원회 거버넌스로 이루어져 있어 종합적이고 스마트한 이민·다문화행정을 구현하지 못하고 부처별 고유정책화를 가져왔음

구 분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처별 특화된 그룹에 점착된 정책이 집행되고 있음. 특히 결혼 이민자와 귀화자를 중심으로 하는 다문화가족정책의 경우 이민·다문화의 특수성이 배제된 채 여성가족부의 고유정책으로써 가족정책으로 일반화되고 있음 ● 국가재정운영에서 그 대상이 외국인이라는 일반인의 부정적 인식 있음 ● 부처별 각각의 예산집행으로 재정운영이 특정 대상에만 집중적으로 집행될 수 있음
공약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속성 있는 장기적인 이민·다문화 정책의 비전과 전망을 제시하고,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함 ● 저출산·고령화 시대 국가의 인구 문제 및 경제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이주민을 정책대상에 포함하는 적극적인 이민·다문화정책을 추진해야 함 ● 이민·다문화정책을 체계적으로 입안·심의·조정 등 총괄할 수 있는 중앙정부 부처(가칭 이민청)를 설치해야 함. ● 반이민정서를 상쇄하고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사회통합기금을 마련해야함

2 이주배경아동청소년 지원체계 강화

구 분	내 용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배경아동·청소년은 최소 26만여 명으로 전체 아동·청소년 대비 3% 내외이며, 계속 증가 추세임 ● 다문화가족자녀, 외국인주민자녀, 동포 중도입국자녀, 북한이탈주민 중도입국자녀 등 다양한 형태의 이주배경아동·청소년이 있음 ● 부모의 재혼과 비자발적 이주를 한 중도입국자녀의 경우 새로운 가정에 적응하지 못하고 고시원, 독서실 등에 따로 거주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는 출신배경 노출에 대한 두려움, 이주과정에서 겪은 공포, 기아, 가족의 이산과 재구성, 문화 충격 등 다양한 케이스의 경험이 있음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배경아동·청소년 가운데 미등록아동·청소년이 상당 수 존재하지만 정확한 통계가 없음 ● 이주배경아동·청소년은 정서적으로 볼 때 복잡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 등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더 많아 언어, 학업문제, 정체성 혼란 등으로 상대적 박탈감, 무능력감, 억울함, 외로움과 답답함을 경험함 ● 부모의 이혼과 재혼 등 가족 내 문제들은 아동·청소년들의 문제로 이어져 낮은 학업 수행능력, 진로의식의 부재, 결손 및 분리 상황에서 오는 스트레스 등으로 성장불균형으로 이어지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건강한 성장을 위한 기관 간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가운데는 이주 과정의 경험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음
공약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등록이주아동·청소년의 실태 파악을 강구하고 공교육 진입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함 ● 모든 이주배경아동·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전담 사례관리사 제도를 도입 적극 지원해야 함 ● 사각지대 이주배경아동·청소년 발굴을 위한 부처 간 연계, 지역 내 연계를 통한 정책을 강화해야 함 ●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케이스별 정기적 치료 프로그램 제공해야 함

3 다문화가족서비스 전달체계 정비

구 분	내 용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가족부는 다양한 가족을 위한 포괄적 지원을 주장하면서 부처의 이기적 생존과 이해관계에 의해 다문화가족을 이민·다문화 정책이 아닌 가족정책의 한 분야에 머물게 하므로 부처 생존에는 성공하고 있음 ●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는 보다 나은 자신의 삶을 위해 한국에 왔고, 한국사회에서 가정을 이루고 그 삶을 확장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매개로 함 ● 센터 종사자들은 엄격한 선발기준을 통과한 역량있는 전문가로서 다문화가족이 차별받지 않고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있음 ●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하지만 온정주의적이고 시혜적인 동화주의의 다문화가족정책은 여전히 다문화가족을 특별한 존재로 다루고 있음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의 이민배경이라는 특수성이 무시되었고, 이국 땅에서 결혼이민자와 귀화자의 친정집과 같은 장소 정서적 보루를 빼앗아 버렸음 ● 무리하게 이루어진 통합센터는 더 이상 수혜자에 맞춰진 서비스가 아니라 부처의 사업수행을 위한 수단화된 도구일 뿐임 ● 센터 종사자는 동일한 복지기관의 종사자이지만 고용유지가 어려운 열악한 처우의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음 ● 다문화가족은 보통사람이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역차별 정책으로 이어지게 하며, 다문화가족을 수단화하고 구경거리로 전락시키고 있음 ● 다문화가족서비스가 협의의 다문화가족 외 영주권자, 재외동포, 유학생, 난민 등 장기체류 외국인의 가족에게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다문화가족서비스 전달체계는 다문화 세대원 전체가 대상이며, 일반인 대상의 인식개선 사업은 대상자를 훨씬 넘어서는 광의의 개념에 비해 현재 시행되고 전달체계는 가족에만 한정되어 있음.

구 분	내 용
공약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무리한 통합추진을 중단하고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을 위해 결혼이민자와 귀화자의 정서적 보루를 돌려주어야 함 ● 한국에서 결혼이민자와 귀화자의 확장된 삶을 한국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이민정책의 큰 틀에서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재구성해야 함 ● 이민·다문화 전문가로서 센터 종사자들의 처우는 동일노동-동일 임금체계로 개선되어야 함. ● 지극히 사적 영역인 문제가 사회적 이슈화되고, 필요 이상의 다문화가족정책으로 이어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과감히 폐지하거나 변경해야 함 ● 이민·다문화사회통합 차원에서 다문화가족서비스의 효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능전환이 이루어져야 함

4 재한동포의 포용정책 강화

구 분	내 용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외동포를 위해 전담기구인 재외동포재단이 있으며, 100만 재한동포를 위한 기구로 동포체류지원센터(2019년)가 있음 ● 혈연, 언어, 문화가 유사한 동포 자녀에 대한 정부의 보육·교육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동포 포용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사회통합교육이 필요함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포체류지원센터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전무 함 ● 동포 자녀의 보육·교육에 대한 지원 없음 ● 동포에 대한 포용적 교육과 지원이 부족함
공약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포체류지원센터에 대한 인력 및 예산을 지원 제도화 해야 함 ● 동포 자녀 3세, 4세의 보육·교육을 지원해야 함 ● 동포에 대한 장기적이고 적극적인 포용정책을 추진해야 함

5 이주민의 인권기능 확대와 사회통합 강화

구 분	내 용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세계적으로 이주민의 인권기능이 강화되고 있으며,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고용허가제 관련 매년 권고를 하고(2012년8월 31일, 2018년12월14일 등) 있다. 그리고 국제엠네스티(2014년)와 UN인권이사회 인종차별 특별보고서(2015.6.30.)에도 고용허가제 관련 언급을 하고 있음 ● 이주의 규모가 커지고 있고 생산인구의 감소에 따라 정주형 이민자의 증가, 유학생 증가는 청년일자리 잠식된다는 시각, 불법체류자의 지속적 증가는 저소득층 일자리 침해 시각 그리고 단속 ● 공정하고 전문화된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거점기관은 대학교 혹은 지자체 중간지원기관(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외국인주민지원센터, 글로벌센터 등)에 위탁이 필요하고, 이용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일반 운영기관은 지역에서 인증된 NGO 또는 민간단체를 지정할 필요가 있음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한국은 “이주노동자권리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으며, 고용허가제는 외국인노동자의 노동력 활용과 인간 존엄성 무시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상기 지적과 언급에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음 ● 다양한 이민·다문화 현상에 대응하는 어떤 정책적 수단 확보, 어느 분야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투입할 것인지, 어떤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추진 논의 필요함 ● 직업관련 교육 및 실제 생활에 필요한 교육 내용 부족과 실제 교육과정에 취업활동, 직업체험, 이민자 커뮤니티 지도자양성 등 현장과 결합된 교육 방식 도입이 절실함
공약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규범에 준하는 이주민의 인권을 개선해야 함 ● 이주민 스스로 자립하도록 역량을 함양해주는 사회통합으로 정책의 다양성 추구해야 함 ● 이민자의 적응과 자립을 위한 방향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 개선

03

공약

장애인

1. 장애인거주시설 정책 개편
2. 소규모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현실화
3.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지원 강화
4. 중증장애인 체계적인 직업재활 및 직업서비스 지원을 위한 기반 마련
5. 시·도별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격차 해소
6.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최저임금 보전
7. 장애등급제의 실효적 폐지 및 커뮤니티케어 추진에 따른 사례관리 전담인력 확충
8. 장애인활동지원 제도개선을 위한 중장기로드맵 수립
9.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확충
10. 장애인의 서비스 필요 정도에 맞는 종사자 배치
11.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명칭 개정(장애인복지법 개정)
12.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인력충원 및 인건비 현실화
13.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 전달체계 개선
14.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확대
15. 정신재활시설 활성화

전 국가정위탁지원센터협의회
전국노숙인시설협회
전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연합회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
전국여성폭력방지상담원처우개선연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한국노인보호전문기관협의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다문화가족건강가정지원센터협회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2020 4.15 총선

사회복지계 요구
공약집

1 장애인거주시설 정책 개편

구 분	내 용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의 일환으로 ‘탈시설 등 지역사회 정착 환경 조성’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추진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단 구축(2018. 3. 12) -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 시설 거주 장애인의 자립생활 전환 지원체계 마련 -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기간 동안 이용장애인 감소 없었으며 (2012년 26,442명→2016년 26,461명), 실효성 있는 정책 필요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가 시설 중심의 장애인 정책을 주도해 왔음에도 그 책임을 시설로 전가하여 그간의 장애인거주시설의 노력을 폄하 ● 장애인거주시설 정책의 사회적 논의 및 합의 없이 일방적인 정책을 전개해 나가면서 사회적 통합을 저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거주시설 정책을 비판해 오던 단체에서 시설 무용론 및 폐쇄 주장 ● 정부의 주요한 정책인 등급제폐지와 커뮤니티케어·탈시설에 있어 시설이용 관련 정책의 내용이 상반되는 모순 야기 ●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대한 지역 내 인프라 구축 및 사회서비스 부재 ● 탈시설 정책 이전에 시설 입소를 제한하기 위한 정부정책 부재
공약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거주시설 정책 개편(장애인주거다양화 지원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형태 및 거주서비스 다양화 - 거주서비스 기능 및 역할의 재구조화(자산대체 방식 포함) ● 장애인주거지원법 재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에서 책임성 있게 장애인의 지역사회 삶을 지원할 수 있는 주거장소 제공과 지원서비스가 결합된 주거지원서비스 제도화 ●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정책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인프라 및 사회서비스 확충

2 소규모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현실화

구 분	내 용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법 개정(2011.2)으로 장애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과 장애인단기보호시설을 장애인거주시설로 개편 -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3~2017). 주거지원강화 방안으로 장애인거주시설 개편 및 소규모 거주시설 확충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소규모화 추진 - 대표적인 소규모 거주시설인 그룹홈과 단기거주시설은 시도별 운영 지원 제각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및 운영의 어려움 심각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룹홈에 대해 종사자 1명, 365일 근무로 종사자 처우 열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비 및 인력 부족으로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를 준수하지 못하고 처우 열악 ● 단기거주시설 수도권에 편중, 돌봄인력 절대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보호 기능으로 장애인가족의 돌봄부담 완화라는 운영 장점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의 복지부 종사자 배치기준 미준수, 필수인력(사무원, 조리원, 사회재활직) 및 돌봄인력 부족으로 서비스질 하락과 안전문제 노출 ● 2015년 장애인거주시설 국고환원 당시, 그룹홈과 단기거주시설 제외로 17개 시도별 지원현황이 제각각이며 서비스 수준도 천차만별
공약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룹홈 3교대를 위한 시설당 2명 충원 ● 단기거주시설 필수인력(사무원) 및 돌봄 인력 시설당 2명 충원 ● 장애인그룹홈, 장애인단기거주시설 국고환원

3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지원 강화

구 분	내 용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거주시설은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개인 등 운영주체가 다양함 ● 국내 시설 운영은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 국내 종교단체 및 자선단체와 독지가, 의원단체 등 민간단체에 의해 아동, 장애인 등을 중심으로 시작됨. ● 장애인거주시설들에 대한 지원은 민간단체에 의존하다가 1980년대 말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을 거치면서 시설이 확대되고 1990년부터 현재의 지원체계가 이루어 졌음 ● 당초 재단법인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제정 이후 사회복지법인으로 전환되어 현재까지 이루고 있음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시설 운영만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에 대한 지원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금 및 국내외 원조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아닌 경우, 시설 운영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해서도 사무국과 직원 채용을 의무화하고, 시설 종사자의 법인업무 겸직을 제한하고 있음 ●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에 대해 지도점검 강화 ● 사회복지법인과 설립자의 사회적 역할과 기여에 대해서 예우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의 기능이 미흡할 때 요보호대상자를 보살피고 사회안정망 역할을 담당한 사회복지법인과 개인의 재산을 출현하고 헌신한 설립자에 대한 예우 규정 부재 ● 법인 설립자들의 사회적 소외감과 상실감 증가
공약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사업법개정을 통한 사회복지법인 지원과 설립자에 대한 예우 등 근거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원 - 사회복지법인 설립자에 대한 예우 - 법인의 해산 장려금 지원

4 중증장애인 체계적인 직업재활 및 직업서비스 지원을 위한 기반 마련

구 분	내 용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장애인 고용률은 34.5%로 전체 인구의 절반 수준이며, 실업률은 6.6%로 전체 인구보다 약 1.7배 높게 나타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중 중증장애인 고용률 20.2%, 실업률 8.4%, 15세~29세 청년층의 고용률 29.7%, 실업률 12.3%로 나타나, 특히 중증장애인과 청년층의 고용 문제가 심각함 ● 매년 특수교육을 받고 졸업하는 장애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취업자 비율은 20% 수준에 정체되어 있으며, 비진학·미취업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진학·미취업자 수 : '14년 3,219명 → '19년 4,271명 - 장애 학생의 진로·직업교육의 일환으로 전공과를 운영하고 있으나 전공과 졸업 후 절반 이상이 갈 곳이 없어 실업상태에 머무르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 전공과 졸업생 2,234명 중 비진학·미취업자 1,207명 (54.1%)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중증장애인 직업재활과 일자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시도하였으나, 중증장애인 고용실태는 개선되지 못하고 비슷한 수준에 정체되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증장애인 고용률 '10년 17.8% → '18년 20.2%, 실업률 '10년 11.8% → '18년 8.4% ● 매년 특수교육을 받고 졸업한 학생 중 약 절반 정도가 비진학·미취업 상태에 놓여있으나 구체적인 현황 파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직업 훈련이나 직업서비스 지원을 위한 체계도 미비 ●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부가 중증장애인 직업재활과 취업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유사 서비스 중복, 부처 간 연계 부족, 서비스 분절성, 실효성 부족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성인기 진입 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인 직업지원 시스템도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이나 직업재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의 혼란만 가중되고 유사한 사업을 전전하거나 서비스 단절로 원점에서

구 분	내 용
	<p>다시 시작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직업훈련 인프라가 확대되고 있으나 장애 특성, 수요 등을 고려한 계획적인 훈련기관 확충이나 기관 간 연계 미비 ● 직업훈련 및 직업재활서비스 기관의 명확한 역할분담과 필요한 력 지원, 각 기관 간 연계, 취업지원 서비스와의 연계 등 체계적 시스템 부재로 '훈련·직업재활서비스 → 취업 → 신규 장애인 서비스 이용(필요시 재훈련)'의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지 못함
공약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증장애인이 필요한 직업재활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하고 일을 통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직업재활 및 직업서비스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 ● 성인기 진입 장애인 현황, 수요, 현행 직업훈련·직업재활서비스 기관 현황 등을 고려한 중·장기적인 중증장애인 훈련·직업재활 서비스 지원 계획 수립 및 기관 확충 ● '훈련-취업-신규이용·재훈련'의 선순환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 및 지원(인력, 사업비 등)

5 시·도별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격차 해소

구 분	내 용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5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사업 지방이양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 수준과 관심도에 따라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지원이 시·도별로 상이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직업재활시설 평균 종사자 인력 지원 격차 최대 8.2명 (2018년 시설 당 종사자 인력 : 제주도 12.6명, 인천/울산 4.4명) - 2018년 지자체 시설 당 지원 예산 격차 최대 약 3.6억 원 (2018년 시설 당 지원예산 : 제주도 5.9억 원, 전남 2.3억 원) ● 직업재활시설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 최소한의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최소 지원기준도 준수하지 않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기준 대비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충원률 76.9%에 불과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직업재활은 국민의 기본권인 근로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비스로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나, 지자체 지원 수준 차이로 인한 지역별 직업재활 서비스의 양적·질적 격차 발생 ●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관심과 이해 부족으로 직업재활이 정책 후순위로 밀리면서 일반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직업재활서비스와 고용 기회를 제공하는 직업재활시설 기능 위축 ● 일반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위해 직업재활시설의 역할 확대와 기능 강화가 매우 중요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부족으로 한계 발생
공약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정한 직업재활시설 최소지원기준 준수 ● 지역 내 직업재활시설 제 기능을 위한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 지역 내 수요를 고려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확충

구 분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훈련수당 지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인력 및 관리운영비 지원 현실화 - 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 직업생활 및 직업훈련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능보강 지원 확대

6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최저임금 보전

구 분	내 용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재활시설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고용과 임금 향상에 기여해 왔으나,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지속적인 시설 수익 감소로 한계에 이르렀음 ※ 최저임금 이상 지급 근로장애인 수 '16년 3,056명 → '18년 3,537명(15.8% 증가), '18년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비율 95.1%, ※ 직업재활시설 수익금 : '15년 1,247억 원 → '18년 1,021억 원 (△18.1%) ●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최저임금 지급에 대한 국·내외 요구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년 UN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임금을 보조해 주는 제도 도입을 통해 최저임금 적용에서 배제되고 있는 장애인의 최저임금 보장 권고 - 장애인단체, 언론, 국회 등에서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저임금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최저임금 지급 요구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고용 유지, 최저임금 지급이 어려워지면서, 근로장애인 고용 및 근로시간 축소(근로장애인 계약종료 139명, 근로시간 축소 1,215명 2018.11월 기준), 근로환경 악화 등의 부작용 발생 ●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장애인이 생산활동에 참여해서 발생한 수익금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정부의 근로장애인 임금 지원은 없음 ※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전국 최초로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인건비 보조
공약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최저임금 지급을 위해 정부가 임금의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 실시

7

장애등급제의 실효적 폐지 및 커뮤니티케어 추진에 따른 사례관리 전담인력 확충

구 분	내 용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등급제 폐지 본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부는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2015, 2016년 국민연금공단 중심의 시범사업 진행 - 2017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과 장애인복지관 등에 의한 동행상담, 사례관리 등의 협력적 사업이 포함된 3차 시범사업을 통해 최종적으로 2019년 7월 민관협력에 의한 장애등급제 폐지 본사업이 추진중에 있음 ● 장애등급제 실효적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는 장애범주와 장애 인정기준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세세하게 정해놓고,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장애로 인정하고 있음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차 시범사업 진행 시 민관협력의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3차 등급제 개편 시범사업 추진 시 시군구, 읍면동 등의 공공조직과 장애인복지관과 같은 민간조직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가 잘 이루어지는 지역도 있으나 지역에 따라 상생적 협력관계가 아닌 피동적, 수동적, 일반적 협력관계에 의해 동행상담 및 사례관리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 발생 ●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 설치·운영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 6월 보건복지부가 17개 시도에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 구성 시 민간부문의 자원 발굴 및 서비스 연계의 중심 전달체계인 장애인복지관을 포함한 민간기관의 참여가 활성화 되도록 독려할 것과 장애인복지관의 사례관리 기능 강화에 따라 복지관 인력배치 시 사례관리 인력이 우선 증원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이 이루어졌으나 미미한 상태임 ● 장애범주 제한에 따른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가 미리 정해져 놓은 범주에 속하지 않으면 실제로 큰 어려움이 있어도 장애로 인정되지 않아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구 분	내 용
	<p>- 2019년 11월 초 대법원에서 틱 장애가 장애인복지법에 열거된 장애가 아니라 하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심하다면 장애등록을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하였기 때문에 이 판례를 제도에 반영해야 하는 상황임</p>
공약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등급제 폐지 본 사업 추진에 따른 대상자 발굴, 초기상담, 서비스지원계획 수립, 자원공유 등의 원활한 민관협력 및 지역사회에서의 커뮤니티케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별 동행상담 및 사례관리 전담인력 확충 ● 15개 장애유형 내에서만 장애로 인정하던 시행체계가 달라져야 하고, 희귀질환 등으로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장애인으로 등록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제도로 전환 필요

8 장애인활동지원 제도개선을 위한 중장기로드맵 수립

구 분	내 용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양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2007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하여 2011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으로 2018년 말 수급자 8만명을 넘어서는 등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 자리매김하며 양적으로 확대 - 그러나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자의 증가속도에 비례하는 예산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장애인, 활동보조인, 활동지원기관 등 다중 이해관계자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기준법 준수가 어려운 서비스 수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 활동보조 급여 단가가 12,960원으로 인상되어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었으나 근로기준법에 의한 시간외, 연차수당의 지급은 일자리 안정자금에 의존하고 있어 근로기준법 준수가 어려운 상황임 ●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의 한시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예외적으로 30인 이상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에 적용하고 있으나 활동지원사 처우개선에는 미흡한 상황임 - 이에 따라 활동지원사의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 요청과 더불어 활동지원 기관에 대한 고용노동부 진정 및 법적 분쟁 심화되고 있음
공약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문제점 해결 및 최저임금 인상율과 연동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법정수당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 현행 근로기준법 미준수로 인한 비영리 민간단체의 범법기관 전락을 막기 위해 국가책임에 의한 장애인정책의 일환으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도개선을 위한 중장기적 로드맵 수립

9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확충

구 분	내 용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전국 등록장애인 수는 2,585,876명이며(보건복지부, 2018), 이 중 장애인주간보호서비스 이용 욕구가 있는 장애인은 44,684명으로 추정됨 ● 2018년 12월말 현재,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수는 690개이며, 이용 장애인 정원은 11,678명임 																																																																																																																		
	<p>〈표〉 지역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이용 욕구 충족률</p>																																																																																																																		
	<table border="1"> <thead> <tr> <th>지 역</th> <th>등록장애인 수¹⁾ (명)</th> <th>서비스 수요²⁾ (명)</th> <th>시설 수³⁾ (개)</th> <th>시설 정원³⁾ (명)</th> <th>서비스 욕구 충족률</th> </tr> </thead> <tbody> <tr><td>합계</td><td>2,585,876</td><td>44,684</td><td>712</td><td>12,022</td><td>26.9</td></tr> <tr><td>서울</td><td>392,920</td><td>6,790</td><td>121</td><td>1,544</td><td>22.7</td></tr> <tr><td>부산</td><td>173,820</td><td>3,004</td><td>59</td><td>958</td><td>31.9</td></tr> <tr><td>대구</td><td>123,070</td><td>2,127</td><td>48</td><td>791</td><td>37.2</td></tr> <tr><td>인천</td><td>141,771</td><td>2,450</td><td>37</td><td>553</td><td>22.6</td></tr> <tr><td>광주</td><td>69,884</td><td>1,208</td><td>34</td><td>659</td><td>54.6</td></tr> <tr><td>대전</td><td>72,927</td><td>1,260</td><td>41</td><td>605</td><td>48.0</td></tr> <tr><td>울산</td><td>50,640</td><td>875</td><td>37</td><td>515</td><td>58.8</td></tr> <tr><td>세종</td><td>11,404</td><td>197</td><td>2</td><td>46</td><td>23.3</td></tr> <tr><td>경기</td><td>547,386</td><td>9,459</td><td>127</td><td>2,746</td><td>29.0</td></tr> <tr><td>강원</td><td>100,693</td><td>1,740</td><td>17</td><td>311</td><td>17.9</td></tr> <tr><td>충북</td><td>97,086</td><td>1,678</td><td>16</td><td>323</td><td>19.3</td></tr> <tr><td>충남</td><td>131,910</td><td>2,279</td><td>13</td><td>233</td><td>10.2</td></tr> <tr><td>전북</td><td>131,746</td><td>2,277</td><td>32</td><td>537</td><td>23.6</td></tr> <tr><td>전남</td><td>142,213</td><td>2,457</td><td>26</td><td>532</td><td>21.6</td></tr> <tr><td>경북</td><td>176,550</td><td>3,051</td><td>34</td><td>490</td><td>16.1</td></tr> <tr><td>경남</td><td>186,016</td><td>3,214</td><td>49</td><td>840</td><td>26.1</td></tr> <tr><td>제주</td><td>35,840</td><td>619</td><td>19</td><td>338</td><td>54.6</td></tr> </tbody> </table>	지 역	등록장애인 수 ¹⁾ (명)	서비스 수요 ²⁾ (명)	시설 수 ³⁾ (개)	시설 정원 ³⁾ (명)	서비스 욕구 충족률	합계	2,585,876	44,684	712	12,022	26.9	서울	392,920	6,790	121	1,544	22.7	부산	173,820	3,004	59	958	31.9	대구	123,070	2,127	48	791	37.2	인천	141,771	2,450	37	553	22.6	광주	69,884	1,208	34	659	54.6	대전	72,927	1,260	41	605	48.0	울산	50,640	875	37	515	58.8	세종	11,404	197	2	46	23.3	경기	547,386	9,459	127	2,746	29.0	강원	100,693	1,740	17	311	17.9	충북	97,086	1,678	16	323	19.3	충남	131,910	2,279	13	233	10.2	전북	131,746	2,277	32	537	23.6	전남	142,213	2,457	26	532	21.6	경북	176,550	3,051	34	490	16.1	경남	186,016	3,214	49	840	26.1	제주	35,840	619	19	338	54.6
	지 역	등록장애인 수 ¹⁾ (명)	서비스 수요 ²⁾ (명)	시설 수 ³⁾ (개)	시설 정원 ³⁾ (명)	서비스 욕구 충족률																																																																																																													
	합계	2,585,876	44,684	712	12,022	26.9																																																																																																													
	서울	392,920	6,790	121	1,544	22.7																																																																																																													
	부산	173,820	3,004	59	958	31.9																																																																																																													
	대구	123,070	2,127	48	791	37.2																																																																																																													
	인천	141,771	2,450	37	553	22.6																																																																																																													
	광주	69,884	1,208	34	659	54.6																																																																																																													
대전	72,927	1,260	41	605	48.0																																																																																																														
울산	50,640	875	37	515	58.8																																																																																																														
세종	11,404	197	2	46	23.3																																																																																																														
경기	547,386	9,459	127	2,746	29.0																																																																																																														
강원	100,693	1,740	17	311	17.9																																																																																																														
충북	97,086	1,678	16	323	19.3																																																																																																														
충남	131,910	2,279	13	233	10.2																																																																																																														
전북	131,746	2,277	32	537	23.6																																																																																																														
전남	142,213	2,457	26	532	21.6																																																																																																														
경북	176,550	3,051	34	490	16.1																																																																																																														
경남	186,016	3,214	49	840	26.1																																																																																																														
제주	35,840	619	19	338	54.6																																																																																																														
<p>출처 : 1) 국가통계포털 KOSIS(http://kosis.kr/search/search.do?query=등록장애인수) 2) 박경수·김용득·김미옥·허곤·이승기·서동명·전미자·김진우·윤덕찬·김동기·장기성(2015)의 추정방법(등록장애인 수 × 공적 돌봄 필요비율 14.4% × 주간보호시설 이용 욕구 비율 12.0%)을 적용하여 산출. 3) 보건복지부. 2019. 『2019년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2018. 12. 31. 현재).</p>																																																																																																																			

구 분	내 용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이용 장애인 정원 11,678명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이용 수요자 추정치 43,988명의 26.55%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된 2005년 당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수(전국 259개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에 비해 2배 이상 늘었음에도 욕구 충족률은 26.55%로 낮은 수준임 - 지역별 장애인주간보호서비스 이용 욕구 충족률을 보면, 울산이 56.14%로 가장 높고, 충남의 경우에는 9.14%로 충족률이 가장 낮으며, 강원 15.46%, 충북 17.99% - 장애인주간보호서비스 이용 욕구 충족률이 지역에 따라 46.36%p 차이가 발생하여 지역별 편차가 매우 심각함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을 위한 지방정부의 지원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수가 늘어나는 것은 장애인주간보호서비스 이용 욕구가 크다는 반영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주간보호서비스 현장에는 상당수의 장애인이 대기자로 등록되어 있어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확충이 필요함 ● 정부의 탈시설정책과 커뮤니티케어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와 복지시설의 확충이 필요함
공약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서비스 수요 대비 서비스 욕구 충족률을 고려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확충 ● 뇌병변장애인 전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확충 ● 중고령장애인 전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확충

10 장애인의 서비스 필요 정도에 맞는 종사자 배치

구 분	내 용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에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관리 및 운영 요원(이하 ‘종사자’) 배치기준이 3명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음 ● 『2018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18)에는 시설장 1명, 사회재활교사 3명(이용 장애인 4인당 1인 배치), 기능직 1인 등 5명으로 제시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이용 장애인 중 80% 이상이 지적·자폐성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48.7%(매우 어려움 27.2%, 일부 의사소통 가능 21.5%) - 뇌전증, 행동조절 등을 위해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장애인 37.3% - 자해나 타해, 기물파손, 이탈행위, 소리 지르기 등의 도전적 행동을 가진 장애인 44.3% - 신변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37.6% - 식사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21.0%(매우 어려움 8.9%, 신체적 지원을 통해 가능 12.1%) - 외부활동이 어려운 장애인 35.0%(매우 어려움 11.0%, 신체적 지원을 통해 가능 24.0%) ● 지역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종사자 배치기준은 이용 장애인 10명 기준 최소 3명(서울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전북, 경남)에서 최대 6명(제주)까지 큰 편차 발생 <p style="text-align: center;">〈표〉 지역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종사자 배치기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3">직종별 배치기준 (이용인 10명 이상)</th> <th rowspan="2">사회재활교사 추가배치기준</th> </tr> <tr> <th>시설장</th> <th>사회재활교사</th> <th>기능직</th> </tr> </thead> <tbody> <tr> <td>보건복지부</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style="text-align: center;">이용장애인 4명당 1명¹⁾</td> </tr> <tr> <td>서울</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 style="text-align: center;">0</td> <td style="text-align: center;">지원 없음 최중증다수시설 1명 추가(20개소)</td> </tr> </tbody> </table>	구분	직종별 배치기준 (이용인 10명 이상)			사회재활교사 추가배치기준	시설장	사회재활교사	기능직	보건복지부	1	3	1	이용장애인 4명당 1명 ¹⁾	서울	1	2	0	지원 없음 최중증다수시설 1명 추가(20개소)
구분	직종별 배치기준 (이용인 10명 이상)			사회재활교사 추가배치기준															
	시설장	사회재활교사	기능직																
보건복지부	1	3	1	이용장애인 4명당 1명 ¹⁾															
서울	1	2	0	지원 없음 최중증다수시설 1명 추가(20개소)															

구 분	내 용			
	직종별 배치기준 (이용인 10명 이상)			사회재활교사 추가배치기준
	시설장	사회재활 교사	기능직	
보건 복지부	1	3	1	이용장애인 4명당 1명 ¹⁾
부산	1	2	0	지원 없음 최종증다수시설 1명 추가(19개소)
인천	1	3	0	지원 없음
대구	1	2	0	20명 이상 1명 추가
광주	1	2	0	4명당 1명
대전	1	2	0	기초단체별상이
세종	1	4	1	4명당 1명
울산	1	2	0	지원 없음
경기	1	3 (기초단체별 상이)	0~1	4명당 1명 (기초단체별 상이)
강원	1	3	1 (기초단체별 상이)	지원 없음
충북	1	3	0 (청주시1명)	4명당 1명
충남	1	3	0	기초단체별 상이
전북	1	2	0	18명 이상 +1 24명 이상 +1
전남	1	3	0	20명 이상 1~2명 추가
경북	1	3	1	4명당 1명
경남	1	2~3 (기초단체별 상이)	0	지원 없음
제주	1	4 (1개 시설 5명)	1	5명당 1명
<p>주 : 1)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마다 이용 장애인 정원이 다르므로, 실제 시설 종사자 수는 추가 인력배치기준에 따라 상이함.</p> <p>자료 : 서해정·장기성·송기호(2019).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현황 실태조사」. 한국장애인개발원.</p>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주간보호서비스는 대인서비스로, 서비스 질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적자원의 질에 큰 영향을 받음 - 지역별 종사자 배치기준의 현격한 차이는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질의 차이를 보여줌 			

구 분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 중 (최)중증 장애인 비율이 높아 타인의 도움을 필요한 장애인이 많아 종사자의 높은 직무 강도와 높은 이직률(평균 근속월수 45.6개월, 3.8년, SD = 47.27개월)로 이어짐 - 종사자들의 이직률이 높다는 것은 시설에 경험이 많은 종사자가 적어지고, 서비스 질이 낮아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짐
공약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이용자의 서비스 필요 정도를 반영한 합리적인 수준의 종사자 배치 - 신변처리나 일상생활을 혼자서 할 수 없는 경우, 의사소통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도전적 행동을 가지고 있는 경우 등의 최중증장애인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의 종사자 배치

11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명칭 개정(장애인복지법 개정)

구 분	내 용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기능은 “장애인을 주간에 일시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으며, 2000년 시행 이후 개정된 바 없음 ●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운영목적과 기능에 약간의 변화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 장애인복지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10)에서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낮동안 보호하여 장애인가족의 항시 보호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가족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운영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재활서비스 제공과 장애인 가족의 보호부담을 덜어준다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 - 『2018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18)를 보면,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낮 시간동안 활동위주의 프로그램 및 교육지원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장애인 가족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재활, 활동, 교육 기회 제공뿐만 아니라 가족지원의 맥락으로 이해하고 있음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부 지침의 변화를 보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목적과 기능이 장애인 보호자 중심에서 이용 장애인 중심으로, 단순 보호에서 재활프로그램·교육·활동·경험 위주의 서비스 제공으로 변화되고 있음 ● 장애인주간보호서비스 현장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보호보다는 교육, 활동을 지향하는 서비스를 더욱 중요시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기능을 “낮 시간 동안 장애인을 보호”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 원인은 명칭이 “주간보호 시설”이기 때문임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르면 “장애인을 주간에 일시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정

구 분	내 용									
	<p>의하고 있어, 그 기능이 제공자 중심, 시설중심의 보호형 서비스로 인식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에 시설 명칭을 변경하고, 서비스 관점을 이용자의 입장으로 전환함으로써, 보호중심의 서비스에서 활동과 발달을 지향하는 서비스로 전환해야 함 									
공약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제1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496 734 943 790">현 행</th> <th data-bbox="943 734 1385 790">개정안</th> </tr> </thead> </table>	현 행	개정안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943 734 1385 790">현 행</th> <th data-bbox="1385 734 1385 790">개정안</th> </tr> </thead> </table>	현 행	개정안				
	현 행	개정안								
	현 행	개정안								
<p>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인 거주시설 : 생략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3. ~ 5. 생략 	<p>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인 거주시설 : 생략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복지관, 낮활동센터, 체육시설, 수련시설, 재활치료시설 등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3. ~ 5. 생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중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서비스 제공자 중심에서 이용 장애인 중심으로 정의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943 1335 1385 1518">현 행</th> <th data-bbox="1385 1335 1385 1518">개정안</th> </tr> </thead> </table>		현 행	개정안						
현 행	개정안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496 1518 943 1563">현 행</th> <th data-bbox="943 1518 1385 1563">개정안</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496 1563 943 1906">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p>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을 주간에 일시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p> </td> <td data-bbox="943 1563 1385 1906">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p>다. 장애인 낮활동센터: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이 낮 시간 동안 활동위주의 프로그램, 교육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관</p> </td> </tr> </tbody> </table>	현 행	개정안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p>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을 주간에 일시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p>다. 장애인 낮활동센터: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이 낮 시간 동안 활동위주의 프로그램, 교육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관</p>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943 1518 1385 1563">현 행</th> <th data-bbox="1385 1518 1385 1563">개정안</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943 1563 1385 1906">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p>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을 주간에 일시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p> </td> <td data-bbox="1385 1563 1385 1906">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p>다. 장애인 낮활동센터: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이 낮 시간 동안 활동위주의 프로그램, 교육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관</p> </td> </tr> </tbody> </table>		현 행	개정안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p>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을 주간에 일시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p>다. 장애인 낮활동센터: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이 낮 시간 동안 활동위주의 프로그램, 교육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관</p>
현 행	개정안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p>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을 주간에 일시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p>다. 장애인 낮활동센터: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이 낮 시간 동안 활동위주의 프로그램, 교육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관</p>									
현 행	개정안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p>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을 주간에 일시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p>다. 장애인 낮활동센터: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이 낮 시간 동안 활동위주의 프로그램, 교육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관</p>									

12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인력충원 및 인건비 현실화

구 분	내 용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가족의 보호가 어려운 만성 정신질환자를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시켜 요양 및 보호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복귀 도모 ● (시설 수) 전국 59개소 10,000명 입소 (직원 수 : 1,988명) ● (환자특성) - 만성 정신질환(조현병)으로 평생 약물복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지지체계가 해지되어 돌볼 가족이 없음 - 85%가 기초 생활 수급자, 무연고자 29% 임 - 노인성 질환 중복장애 대다수임 ● (근거법령) 「정신건강복지법」,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사업수행방식) 국고와 지방비 매칭(서울 50%, 지방 70%), 2015년 국고 환원 ● 같은 생활시설인 장애인거주시설과 정신요양시설의 인력 및 서비스 차이 확인 함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4.7명당 1명, 정신요양시설 14명당 1명 지원) ● 사회복지시설 52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 ● 근로자 30인 이상 2021년부터 노동법상 공휴일 유급휴일화 등 근로기준법 강화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기준법 개정(2018.2.28.)으로 주 52시간 특례업종 제외되어, 정신요양시설 59개소 1,988명이 10,000명의 생활인을 요양보호로 업무 과중 및 서비스 질 저하로 교대 근무자의 3교대 인력 확충 필요 ● 시설 입소자의 노령화 및 장애 등에 따른 요양 및 보호서비스에 더 많은 인력과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도 그에 대한 대책이 없어 적절한 서비스 지원이 어려움 ● 그간 장애인생활시설의 인력 확충에 비해 정신요양시설의 인력 증원은 미미하였음. 이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소외 및 차별로써,

구 분	내 용
	<p>지적장애인 등과 정신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및 양질에 대한 비교분석 필요. 정신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등을 강화할 있도록 현실적 대안이 필요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수에 따른 지원 기준으로 근무를 하게 될 경우, 24시간 근무를 요하는 생활시설의 특성상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을 앞두고 그에 대한 대비가 꼭 필요함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나아가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등을 통해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각각의 역할이 모호하거나 중복되고 연계가 원활하지 않아 정신건강복지 전달체계의 분절상태가 지속되고 있음
공약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2017년도 사회복지 생활시설 가이드라인 적용, 2020년도 사회복지 생활시설 가이드라인 지급 요망 종사자 인력 충원 시급 추가인원 및 예산소요

[추가인원 및 예산 소요]

(단위 : 천원)

구분	생활지도원		간호사		조리원		합계	
	현인원	추가인원	현인원	추가인원	현인원	추가인원	현인원	추가인원
인원	764	255	308	103	226	132	1,296	490
추가금액	13,612,474천원		5,498,372천원		5,392,711천원		24,503,556천원	

- 10호봉 기준 산출 (기본급, 명절휴가비,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처우 개선비, 퇴직적립금, 사회보험 및 퇴직적립금)

13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 전달체계 개선

구 분	내 용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 강화와 복지 향상을 위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된 이후 보건복지부는 2017년 7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재활을 위해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건강관리 및 치료비 지원, 주거지원 방안 마련, 지역사회 인프라 확대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으나 탈원화를 통한 지역사회 지원은 미흡하고 전체 입원·입소자의 61.1%는 6개월 이상 장기입원하고 있어 여전히 입원중심의 정신건강정책이 시행되고 있음 2019년 5월 보건복지부의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 방안에서도 정부는 여전히 정신질환자의 복지보다는 응급대응체계, 병원기반 사례관리, 낮병원 활성화 등의 의료적 개입을 중심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용적 복지국가를 표방하며 시행하고 있는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에서도 정신질환자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은 한 지역에서만 시행하고 있고 사업 확대에 대한 가능성도 불투명하여 의료서비스와 지역사회복지서비스의 균형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에 의하면 우리나라 보건 분야 예산 중 정신건강관련 예산은 1.5%로 WHO 권고 수준이 5%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상태여서 재원의 확보 없이는 정신질환의 예방·치료·재활을 위한 정책을 균형있게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함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나아가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등을 통해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각각의 역할이 모호하거나 중복되고 연계가 원활하지 않아 정신건강복지 전달체계의 분절상태가 지속되고 있음

구 분	내 용
공약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질환의 예방·치료를 위한 의료서비스체계와 함께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재활과 정착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확보해야 함 ●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통합돌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역할과 기능 정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해야 함. ● 정신질환의 사회적 편견극복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인식개선사업이 필요함

14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확대

구 분	내 용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5년 제정된 정신보건법의 미흡한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2016년 5월 29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로 전부개정 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근거를 마련(제33조부터 제38조까지)하였으나 법 개정 이후 정신질환자의 복지서비스 개발은 미흡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부족함 ● 정신건강복지법 제3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질환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으나 권고조항으로만 그치고 있고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 시행규칙에 담지 못하고 있음. 다만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제30조에서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실태 및 현황조사를 할 수 있다는 단서만을 담고 있어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개발 및 제공에 대한 책임성이 모호한 상황이고 실태 및 현황조사 조차 시행되지 않고 있음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질환자들은 주로 정신재활시설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으나 정신재활시설은 정신건강복지법 제정 이후에도 정신보건법에서 명시한 사회재활활동 및 직업재활활동을 중심의 단편적이거나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에 머무르고 있음. 정신질환자를 위한 구체적인 복지서비스 기준을 가지고 정신질환자의 변화하는 복지 수요와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기 위하여 복지서비스 실태 및 현황 조사를 기반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개발에 책임을 가져야 함 ● 한편 장애등록을 한 정신질환자의 경우 복지 욕구 해결을 위해 장애인복지법의 복지서비스 혜택을 받고자 하여도 「장애인복지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해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주거편의·상담·치료·훈련 등의 필요한 서비스의 제공이 제한되고 있고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의 답변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가 정신질환자의 보편적 장애인 복지전달체계에서의 배제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해결하기 위

구 분	내 용
	<p>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정신질환자의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함</p>
공약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건강복지법에서 규정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개발, 고용 및 직업재활 지원, 평생교육 지원,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지원, 지역사회 거주·치료·재활 등 통합지원,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등 복지서비스의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령, 시행규칙에 명시해야 함.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30조에 의거하여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연구 및 개발을 위한 실태 또는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적극 반영해야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개발 및 제공을 위해 정신재활시설 등 다양한 기관·법인·단체에 대해서 행정 및 예산 지원을 해야 함. ● 광역자치단체별 ‘정신장애인종합복지관’을 설치하여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에게 제공해야 함.

15 정신재활시설 활성화

구 분	내 용																		
<p>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8년 정신재활시설은 전국에 349개소 설치되어 있으며, 시설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은 절신질환자 수는 총 7,884명으로 나타남 전국민의 1%를 중증정신질환자로 추정*할 때, 행정구역별 총인구 대비 정신재활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정신질환자 이용가능 인원은 서울의 경우 2.4%, 경기 0.6%, 전남 0.4% 이며, 전국적 규모에서는 정신질환자 1.4%만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개수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보건복지부 개정정신보건법 주요내용 중 정신질환자 등 개념 및 규모 정신재활시설은 전국 349개소 중 서울(118개소), 경기(50개소)에 정신재활시설의 48.1%가 설치되어 있어 수도권과 지방간의 편차가 상당히 크며, 전국 229개 시·군·구 중 124개의 시·군·구에만 정신재활시설이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105개 시·군·구에는 정신재활시설 자체가 없는 상황임 																		
<p>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신재활시설의 이용 대상은 만7세 이상부터 65세 이상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쳐 있으나 아동 및 고령자에 대한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재활시설이 부족하고 정신재활시설의 지역간·유형별 편차로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제공의 단절이 발생함 <p style="text-align: center;">〈정신재활시설 설치 현황〉</p> <table border="1" data-bbox="496 1574 1386 1776"> <thead> <tr> <th>구분</th> <th>생활 시설</th> <th>주간 재활 시설</th> <th>공동 생활 가정</th> <th>지역 사회 전환 시설</th> <th>직업 재활 시설</th> <th>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시설</th> <th>중독자 재활 시설</th> <th>종합 시설</th> </tr> </thead> <tbody> <tr> <td>개소수</td> <td>20</td> <td>86</td> <td>189</td> <td>4</td> <td>15</td> <td>10</td> <td>5</td> <td>20</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신질환 최초 발생 시기가 대학교 이하에서 62.8%*, 만10~29세 58.8%**로 아동·청소년기의 정신질환 치료 및 서비스가 필요함을 알 수 있으나 현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재활시설은 서울시에만 12개소를 운영하고 있어 아동·청소년은 	구분	생활 시설	주간 재활 시설	공동 생활 가정	지역 사회 전환 시설	직업 재활 시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시설	중독자 재활 시설	종합 시설	개소수	20	86	189	4	15	10	5	20
구분	생활 시설	주간 재활 시설	공동 생활 가정	지역 사회 전환 시설	직업 재활 시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시설	중독자 재활 시설	종합 시설											
개소수	20	86	189	4	15	10	5	20											

구 분	내 용
	<p>지역사회 정신건강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음</p> <p>* 2018년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거주·치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p> <p>**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한 정신재활시설 중 알코올 또는 약물중독에 따른 정신장애를 포함한 정신질환자를 서비스대상으로 하는 중독자재활시설은 전국 4개소에 불과하여 알코올 및 약물 중독자에 대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음. 2016년 정신질환 실태조사에서 알코올사용장애는 평생유병율이 12.2%로 조현병 0.5%, 기분장애 5.3%에 비교해도 더 많은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함
공약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재활을 위한 시설 유형별, 생애주기별, 대상자별 다양한 복지서비스(주거, 고용, 문화, 여가 등)가 제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신재활시설 설치를 확대해야 함. ● 정신재활시설 확충 계획을 정신건강증진 정책의 국가계획에 포함시켜 정신재활시설 설치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함.

04

공약

노인

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개선 및 수가 현실화
2.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를
사회복지임금체계와 동일
3.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인력배치기준 현실화
4. 농어촌지역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에게 본인부담금
경감제 도입
5. 노인복지법 전부개정 추진
6. 지역 맞춤형 노인복지체계 구축
7.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을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지원법 개정

전 국가정위탁지원센터협의회
전국노숙인시설협회
전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연합회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
전국여성폭력방지상담원처우개선연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한국노인보호전문기관협의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다문화가족건강가정지원센터협회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2020 4.15 총선

사회복지계 요구
공약집

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개선 및 수가 현실화

구 분	내 용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직종 임금격차 및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가산제도 ● 24시간 365일 케어를 위한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불비 ● 비합리적인 대표자겸 시설장의 휴식제도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현장과의 소통 체계 불비 ● 장기요양위원회에 사회복지사를 대변하는 협회 미위촉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종사자 인건비 현실화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도 최저시급으로 산정한 임금총액(최저임금+사회보험금+퇴직적립금)대비 70% 수준인 조리원 가산금 - 2020년도 최저시급으로 산정한 임금총액(최저임금+사회보험금+퇴직적립금)대비 75% 수준인 사회복지사 가산금 - 13년차에 접어드는 노인장기요양현장에서 근무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시설장의 경우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이드라인 원장 1호봉(수당을 제외한 본봉 기준)에도 못미치는 수가를 적용받고 있음 ● 현재 어르신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의 배치인력기준으로는 24시간 365일 케어에 전력할 수 없음 ● 2020년도 장기요양급여제공 고시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는 대표자인 시설장의 휴가를 연간 5일 이내로 규정”함으로써 대표자겸 시설장에게 근로자의 상근 의무규정에 따라 상근함에도 휴가사용권은 부여 휴식제도 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임과 동시에 법적 다툼이 예상 ● 장기요양법령 및 고시 관련 의견 수렴, 시설 운영 및 위험요인(전염병 등)대비 사항에 등 정부의 정책과 현장과의 의사소통 체계가 부족하며 소규모시설의 정보로부터의 소외현상 심각 ● 노인장기요양현장에는 2017년도 말 기준 18,500명의 사회복지사가 근무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사를 대변하는 협회가 장기요양위원회에 위촉되어 있지 않아(현재 의사협회, 간호사협회, 한의

구 분	내 용
	<p>사협회만 위촉) 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권익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의식</p>
<p>공약요구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사 및 조리원 가산금 현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사회복지시설과의 형평성 제고 및 최저임금대비 100%수준으로의 인력추가배치 가산금 현실화 - 급식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리원 가산점수를 추가되는 인원수만큼 부여 ●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어르신 현원 대비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을 3:1에서 2.5:1로 조정 ● 대표자겸 시설장 휴식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기준법상 기준대로 적용 및 그에 따른 고시 개정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현장과의 상시적 소통체계 구축 및 상시적 정책의견 수렴 ● 장기요양위원회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위촉

2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를 사회복지임금체계와 동일

구 분	내 용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종사자 라고 명칭하나 장기요양기관은 직접인력과 간접인력으로 구분하고 있음 ● 장기요양기관은 저수가 체제로 종사자 임금이 최저임금수준으로 지급되고 있음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제공 범위를 간접과 직접으로 나누어 나누는 기준이 불합리하며, 불합리한 기준에 따른 장기근속장려금은 종사자 간의 위화감 조성은 물론 서비스의 외주화(급식/세탁) 초래 ● 고강도업무 대비 낮은 임금체계로 젊은 층의 유입이 없는 현실에서 점점 노노케어로 강화되고 있어서 서비스의 질적하락, 산업재해 등의 급속한 증가 예상 ● 정부의 인건비 기준이 사회복지시설마다 다르게 적용받고 있어서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으며, 특히 장기요양기관은 정부의 저임금 정책으로 「나쁜 일자리」라는 사회적 인식이 강화되어 기피직종으로 전락
공약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서비스 종사자에게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재정책보를 위한 단계별 계획 마련 ● 사회복지기관에 적용하는 인건비가이드라인을 노인의료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및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원)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요구

3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인력배치기준 현실화

구 분	내 용																																																		
공약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인력배치기준 현실화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요양기관은 입소시설로 24시간 운영되고 있음 ● 노인복지법에서 정한 노인의료복지시설 인력배치기준은 10여년 넘게 개정되지 않음 ●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어르신 100명당 1명의 사회복지사를 배치 하지만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최소 어르신 10명만 되어도 사회복지사를 배치하도록 하고있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2" style="border: none;">시설별</th> <th style="border: none;">직종별</th> <th style="border: none;">시설의 장</th> <th style="border: none;">사무 국장</th> <th style="border: none;">사회 복지사</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 style="border: none;">노인 요양 시설</td> <td style="border: none;">입소자 30명 이상</td> <td style="border: none;">1명</td> <td style="border: none;">1명</td> <td style="border: none;">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td> <td style="border: none;">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td> </tr> <tr> <td style="border: none;">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td> <td style="border: none;">1명</td> <td style="border: none;">1명</td> <td colspan="2" style="border: none;">1명</td> </tr> </tbody> </table>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2" style="border: none;">구분</th> <th style="border: none;">시설장</th> <th style="border: none;">사회복지사</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2" style="border: none;">방문요양</td> <td style="border: none;">1명</td> <td style="border: none;">1명(수급자 15명 이상)</td> </tr> <tr> <td colspan="2" style="border: none;">방문목욕</td> <td style="border: none;">1명</td> <td style="border: none;"></td> </tr> <tr> <td rowspan="2" style="border: none;">주·야간 보호</td> <td style="border: none;">이용자 10명 이상</td> <td style="border: none;">1명</td> <td style="border: none;">1명 이상</td> </tr> <tr> <td style="border: none;">이용자 10명 미만</td> <td style="border: none;">1명</td> <td style="border: none;"></td> </tr> <tr> <td rowspan="2" style="border: none;">단기 보호</td> <td style="border: none;">이용자 10명 이상</td> <td style="border: none;">1명</td> <td style="border: none;">1명 이상</td> </tr> <tr> <td style="border: none;">이용자 10명 미만</td> <td style="border: none;">1명</td> <td style="border: none;"></td> </tr> <tr> <td colspan="2" style="border: none;">재가노인지원</td> <td style="border: none;">1명</td> <td style="border: none;">1명</td> </tr> </tbody> </table>				시설별		직종별	시설의 장	사무 국장	사회 복지사	노인 요양 시설	입소자 30명 이상	1명	1명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1명	1명	1명		구분		시설장	사회복지사	방문요양		1명	1명(수급자 15명 이상)	방문목욕		1명		주·야간 보호	이용자 10명 이상	1명	1명 이상	이용자 10명 미만	1명		단기 보호	이용자 10명 이상	1명	1명 이상	이용자 10명 미만	1명		재가노인지원		1명	1명
시설별		직종별	시설의 장	사무 국장	사회 복지사																																														
노인 요양 시설	입소자 30명 이상	1명	1명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1명	1명	1명																																															
구분		시설장	사회복지사																																																
방문요양		1명	1명(수급자 15명 이상)																																																
방문목욕		1명																																																	
주·야간 보호	이용자 10명 이상	1명	1명 이상																																																
	이용자 10명 미만	1명																																																	
단기 보호	이용자 10명 이상	1명	1명 이상																																																
	이용자 10명 미만	1명																																																	
재가노인지원		1명	1명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양보호사의 경우 2교대 3교대 근무체제로 인력배치기준을 준수하고 추가인력을 구성하여 어르신 한 명당 법정기준인 2.5:1 이 아닌 실제적으로는 2.1:1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음 ●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 재가노인복지시설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 																																																		

구 분	내 용
	<p>으며 실제적으로 어르신 100명당 1명의 사회복지사로는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법정 인력배치기준으로는 노인복지서비스 질 향상은커녕 케어인력 및 행정인력 부족으로 노인복지서비스 질은 보장할 수 없음
공약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인력배치기준 현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양보호사 법적 인력배치 기준은 2:1로 변경 해야함 - 사회복지사 법적 인력배치 기준은 25:1로 변경 해야 함

4 농어촌지역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에게 본인부담금 경감제 도입

구 분	내 용
공약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지역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에게 본인부담금 경감제 도입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규모별 상관없이 일괄된 수가적용 ● 대도시 같은 경우 수백명의 입소 대기 ● 입소대기로 인한 노인요양병원 이용률이 증가 ● 농어촌지역은 인접성의 문제 등으로 입소가 되지않아 공실률이 매우 높음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고도 대도시 및 중소도시 같은 경우 대기 인원으로 장기요양기관(요양원)에 입소하지 못하여 서비스를 받지 못함 ● 입소 대기 동안 요양병원 이용 등 사회적비용 발생 및 간병 가족 부담 증가 ● 간병 부담으로 인한 사회관계 단절 및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우울증 증가, 간병 살해 등의 사회문제 발생 ● 농어촌지역은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함에도 입소자가 없어 일자리 감소 및 지역경제 침체 등이 발생함
공약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지역 노인요양시설 입소 어르신에게 본인부담금 경감제도를 도입하여 대도시 등 입소대기 인원의 농어촌지역 노인요양시설 입소로 지속적인 서비스를 받을수 있고 일자리창출과 각종 사회문제 발생을 조기에 예방할 수 있음

5 노인복지법 전부개정 추진

구 분	내 용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복지법은 1997년 전부개정 이후 약 20여 년간 일부개정만을 반복하여 체계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조치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는 노인복지 정책의 기본법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움 ● 이에 체계적인 노인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인정책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영역별로 다양한 노인정책의 추진근거를 보완하는 한편, 전체적인 체계와 조문을 정비하여 노인복지법이 고령화 시대에서 노인복지 정책의 기본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 및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노인복지법 전부개정을 추진함 ● 정부, 노인복지학회, 노년학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대한노인회 등 관계전문가 집단에서 개정방향 및 조문화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공청회를 거쳐 2019년 5월 기동민 의원 등 15명이 발의함 ● 그러나 2019년 12월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단계로 제20대 국회 처리가 불투명함
공약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복지법 전부개정 추진 - 제20대 국회 임기만료폐기시 제21대 국회 제안 추진

6 지역 맞춤형 노인복지체계 구축

구 분	내 용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복지정책 및 서비스의 중앙정부 집중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사회에 접어들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맞춤돌봄 등 중앙 집중화된 건강, 돌봄영역은 형식을 갖춰가고 있으나, 지역 주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지역밀착형 노인복지체계는 미흡 ● 재가노인복지기관의 지역 맞춤형 복지시설로써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소규모 지역 밀착형 노인복지시설로써 심리·정서적으로나 신체적·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노인 등 다양한 노인을 위한 지원사업을 진행하여 왔음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등과 같은 지역 밀착형 복지시설의 확대를 통해 지역 맞춤형 노인복지체계를 구축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중심 노인돌봄체계의 약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단위 노인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입법과정을 통해 중앙집중적인 저소득, 허약 노인에 대한 보호의 개념에서 벗어나 정서적, 사회적 위기노인, 은퇴노인 및 건강한 노인 등 다양한 대상을 위한 일자리, 복지, 여가 등을 지역특화하여 제공하는 형태로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
공약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가노인복지시설 역할강화를 통한 지역복지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지역의 커뮤니티 시설로써 역할을 하기 위해 법적근거와 운영 안정성 확보가 절실히 요구됨. - 이를 기초로 서비스 대상자의 확대, 서비스제공기준과 범위에 대한 적정성, 신속성, 용이성 등의 확보 등의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킴으로써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사각지대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고령사회 지역기반 복지기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여러 측면에 대한 보완과 정책마련 필요

7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을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지원법 개정

구 분	내 용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관련법 개정필요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노인복지법 23조2(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등)</p> <p>①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지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기관으로 한다.</p> <p>2. 노인일자리지원기관 :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 개발.지원, 창업.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판매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p> <p>노인복지법 시행령 17조의3(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등)</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중 유형별(사회서비스형, 민간형) 일자리에 대한 노무, 세무의 법률문제에 의한 사업미활성화 및 근로자성으로 인한 기관부담 과중 및 각종 법적지원체계 부재로 인한 현장의 혼란 개선 필요.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고령화로 인한 각종 보험체계 마련 및 일자리수행체계에 안정적 고용환경과 운영을 위한 제도마련 필요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노인일자리사업을 둘러싸고 있는 각종 노동법 관련(근로자성) 문제 및 세무 관련문제로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의 어려움 발생. ● 노인일자리사업은 소득보충, 건강개선 및 사회적 관계증진등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의 목적사업이나 고용노동부의 근로자성 해석으로 인한 현장에 근로기준법등 법률적 문제. ● 정부가 노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법률상 의무(직장어린이집 설치, 장애인 의무고용 등)를 준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노인일자리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각종 지원체계 마련이 절실함. (국공유재산 무상 사용, 정부사업 위탁시 수의계약 지원 등) ● 인력기준에 따른 직원5명이 노인일자리 개발.지원,창업.육성,재화의 생산.판매등의 사업 진행으로 질 높은 일자리 개발이 어려운 인력구조

구 분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일자리사업 유형중 공익활동 참여자의 안전관리를 위한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나 사고발생시 보상체계 미흡함.
공약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일자리지원법 마련(가칭) ● 노인일자리지원법은 20대국회에서 몇몇 국회의원이 발의를 하였으나 회기연도 내에 처리되지 않은 상태임.

05

공약

노숙인

- 1. 노숙인 국고지원사업 확대
- 2. 중앙노숙인종합지원센터 설립
- 3. '노숙인'에서 '홈리스'로 명칭변경
- 4. 노숙인시설 체계개선 및 운영비 현실화

전 국가정위탁지원센터협의회
 전국노숙인시설협회
 전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연합회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
 전국여성폭력방지상담원처우개선연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한국노인보호전문기관협의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다문화가족건강가정지원센터협회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1 노숙인 국고지원사업 확대

구 분	내 용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행하는 현행 노숙인등의 복지사업안내 지침서(p93~95)에 따르면 노숙인복지사업의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은 노숙인재활/요양시설에만 국한되어 규정하고 있어 노숙인자활시설의 경우 국고보조금 지원이 되지않고 있음 ● 위 복지사업안내 지침서(p94)에는 기능보강사업비의 지원신청이 국고보조금교부신청으로 한정되어 있어 노숙인자활시설의 경우 원천적으로 기능보강사업비의 신청이 불가능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부에서 교부하는 국고보조금의 경우 노숙인재활/요양시설에만 지급하고 있고 노숙인자활시설은 지방이양사업으로 규정되어 국고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있음 ● 노숙인자활시설이 전국적으로 87개시설이 있지만 시군구지방정부에서 지방비로 보조금을 교부하므로 국고보조금에 지급규정에 비하여 상당히 적은 액수임 ● 또한 자활시설의 경우 1998년 외환위기이후 실직노숙인을 대상으로 사업이 시작되어 시설의 노후화로 기능보강이 필요한 실정이지만 기능보강사업비의 교부는 규정상 국고보조금 시설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노숙인자활시설은 기능보강사업비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어 이중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
공약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부 노숙인등의 복지사업안내 지침서를 개정하여 노숙인자활시설도 국비사업으로 전환하여 국고보조금 신청교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함 ● 따라서 노숙인자활시설도 기능보강사업비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2 중앙노숙인종합지원센터 설립

구 분	내 용														
<p>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숙인은 경제적·물질적 측면에서만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직장을 잃고 가족·친지들과의 인간관계가 단절되고 심지어 알코올 중독, 약물중독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함 ● 현행 법에서는 노숙인 지원을 위한 상담 및 복지서비스 연계, 이력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근거를 두고 있음 <p style="text-align: center;">【노숙인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현황】</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개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전 국</th> <th>서울</th> <th>부산</th> <th>대구</th> <th>대전</th> <th>경기</th> <th>제주</th> </tr> </thead> <tbody> <tr> <td>10</td> <td>2</td> <td>2</td> <td>1</td> <td>1</td> <td>3</td> <td>1</td> </tr> </tbody> </table> <p>자료: 보건복지부</p>	전 국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경기	제주	10	2	2	1	1	3	1
전 국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경기	제주									
10	2	2	1	1	3	1									
<p>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지원센터의 경우 기존 대도시 위주의 상담센터를 종합지원센터로 명칭만 변경한 수준으로, 노숙인 발견과 지원의 최일선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 특히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미설치 시도의 경우, 지자체 노숙인 업무 담당공무원, 경찰 등에 의해 노숙인생활시설로 인계됨에 따라 일시보호 업무까지 가중되고 있음 														
<p>공약요구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법률 개정을 통해 노숙인복지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개발, 지역지원센터 운영지원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숙인 지원을 위한 상담 및 복지서비스 연계, 이력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3 '노숙인'에서 '홈리스'로 명칭변경

구 분	내 용																																										
<p>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2011.3.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노숙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 ● 현행 법에서는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p style="text-align: center;">【연도별 노숙인 현황】</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명)</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연도</th> <th style="width: 15%;">'13</th> <th style="width: 15%;">'14</th> <th style="width: 15%;">'15</th> <th style="width: 15%;">'16</th> <th style="width: 15%;">'17</th> </tr> </thead> <tbody> <tr> <td>합계</td> <td>12,656</td> <td>12,347</td> <td>11,901</td> <td>10,645</td> <td>10,828</td> </tr> <tr> <td>자활</td> <td>2,095</td> <td>1,949</td> <td>1,683</td> <td>1,613</td> <td>1,583</td> </tr> <tr> <td>일시보호</td> <td>844</td> <td>899</td> <td>1,045</td> <td>798</td> <td>994</td> </tr> <tr> <td>거리</td> <td>1,197</td> <td>1,138</td> <td>1,125</td> <td>969</td> <td>862</td> </tr> <tr> <td>재활·요양</td> <td>8,520</td> <td>8,361</td> <td>8,048</td> <td>7,265</td> <td>7,389</td> </tr> <tr> <td>쪽방주민</td> <td>5,992</td> <td>6,147</td> <td>6,072</td> <td>6,053</td> <td>5,705</td> </tr> </tbody> </table> <p>자료: 보건복지부</p>	연도	'13	'14	'15	'16	'17	합계	12,656	12,347	11,901	10,645	10,828	자활	2,095	1,949	1,683	1,613	1,583	일시보호	844	899	1,045	798	994	거리	1,197	1,138	1,125	969	862	재활·요양	8,520	8,361	8,048	7,265	7,389	쪽방주민	5,992	6,147	6,072	6,053	5,705
연도	'13	'14	'15	'16	'17																																						
합계	12,656	12,347	11,901	10,645	10,828																																						
자활	2,095	1,949	1,683	1,613	1,583																																						
일시보호	844	899	1,045	798	994																																						
거리	1,197	1,138	1,125	969	862																																						
재활·요양	8,520	8,361	8,048	7,265	7,389																																						
쪽방주민	5,992	6,147	6,072	6,053	5,705																																						
<p>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정부는 거리노숙인, 시설노숙인, 쪽방주민만을 정책대상으로 협소하게 규정함으로써 실제와 다르게 과소추계하고 있음 ● 한편 실제 노숙인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주거취약계층의 경우,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약 40만 가구로 조사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차 UN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 권고사항임 																																										
<p>공약요구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숙인”이라는 용어를 “홈리스”로 대체하여 잠재적 노숙의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집단까지 정책 대상에 포함시켜 홈리스에 대한 예방적 대책을 체계화하도록 하고, - 기존 ‘노숙인’ 용어에서 연상되는 부정적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4 노숙인시설 체계개선 및 운영비 현실화

구 분	내 용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법에서 노숙인시설은 생활시설인 자활·재활·요양시설과 이용시설인 종합지원센터·일시보호시설·급식시설·쪽방상담소 등으로 구분하고 있음 ● 한편 노숙인복지 전달체계의 이원화로 재활·요양시설은 중앙정부 지원, 그 외 시설은 지방이양되어 있으며, 실제 시설의 유형과 관계없이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노숙인이 혼합·수용되어 있음 											
	【노숙인시설 생활자 중질환자, 장애인 등 현황】 (단위 : 명, %)											
	구분	총원 (㉠+㉡+㉢)	질환					장애				비질병 /비장애
			소계 (㉠)	정신 질환	신체 질환	노인 성 질환	질환 의증	소계 (㉡)	정신 장애	신체 장애	장애 의증	
	인원	8,150	2,199	1,211	360	225	403	4,948	3,188	966	794	1,003
	비율	100.0	27.0	14.9	4.4	2.8	4.9	60.7	39.1	11.9	9.7	12.3
	자료: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노숙인/정신요양) 운영비 지원수준 현황】 (단위 : 원)											
	구분	노숙인 시설	정신요양시설	지원차액								
				1인당	100명일 경우							
생활인 1인당 지원액(연간)	729,840	1,287,000	△557,160	△55,716,000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유형에 따른 차별화 부족 및 대상자 특성에 맞는 지원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제공되지 않고 있음 ● 지방이양시설에 비해 중앙정부 지원시설은 운영비 지원수준이 현저히 낮아 복지서비스 질 하락이 우려됨 											
공약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숙인시설 유형별 고유의 기능과 역할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 및 운영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06

공약

지역자활

1.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2. 기초자치단체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확대
3. 저소득층 자립 강화를 위한 기초자치단체 자활지원 조례제정

전 국가정위탁지원센터협의회
전국노숙인시설협회
전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연합회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
전국여성폭력방지상담원처우개선연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한국노인보호전문기관협의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다문화가족건강가정지원센터협회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1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구 분	내 용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말 현재 기준 중위소득 40% 기준으로 빈곤하지만 기초 보장 급여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규모가 63만 가구, 93만명에 달함(보건복지부, 2017). ●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도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최후의 사회안전망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어 비수급 빈곤가구가 수급가구보다 더 많은 생활 곤란을 경험하고 있으며*, 결국 생활고를 비관한 가족 동반 자살 사례가 매년 증가** 																																							
	*(수급·비수급빈곤층 집단별 생활곤란 경험 여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 style="width: 15%;">구분</th> <th rowspan="2" style="width: 5%;">수급가구</th> <th colspan="3" style="width: 40%;">비수급가구</th> </tr> <tr> <th style="width: 10%;">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29%</th> <th style="width: 10%;">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40%</th> <th style="width: 10%;">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1년 중 2달 이상 집세가 밀렸거나 집세를 낼 수 없어 집을 옮긴 경험</td> <td>있음</td> <td>6만 가구(4.5)</td> <td>1만 가구(11.6)</td> <td>1만 가구(5.3)</td> <td>1.3만 가구(3.8)</td> </tr> <tr> <td>없음</td> <td>128.1만 가구(96.5)</td> <td>8만 가구(88.4)</td> <td>18만 가구(94.7)</td> <td>33.1만 가구(96.2)</td> </tr> <tr> <td rowspan="2">1년 중 돈이 없이 추운 겨울에 난방을 하지 못한 경험</td> <td>있음</td> <td>4.8만 가구(2.7)</td> <td>3.4만 가구(13.4)</td> <td>6.8만 가구(10.8)</td> <td>6.8만 가구(7.2)</td> </tr> <tr> <td>없음</td> <td>173만 가구(97.3)</td> <td>21.9만 가구(86.6)</td> <td>55.7만 가구(89.2)</td> <td>87.9만 가구(92.8)</td> </tr> <tr> <td>계</td> <td></td> <td>178만 가구</td> <td>25만 가구</td> <td>62만 가구</td> <td>96만 가구</td> </tr> </tbody> </table>					구분	수급가구	비수급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29%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40%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1년 중 2달 이상 집세가 밀렸거나 집세를 낼 수 없어 집을 옮긴 경험	있음	6만 가구(4.5)	1만 가구(11.6)	1만 가구(5.3)	1.3만 가구(3.8)	없음	128.1만 가구(96.5)	8만 가구(88.4)	18만 가구(94.7)	33.1만 가구(96.2)	1년 중 돈이 없이 추운 겨울에 난방을 하지 못한 경험	있음	4.8만 가구(2.7)	3.4만 가구(13.4)	6.8만 가구(10.8)	6.8만 가구(7.2)	없음	173만 가구(97.3)	21.9만 가구(86.6)	55.7만 가구(89.2)	87.9만 가구(92.8)	계		178만 가구	25만 가구	62만 가구
구분	수급가구	비수급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29%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40%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1년 중 2달 이상 집세가 밀렸거나 집세를 낼 수 없어 집을 옮긴 경험	있음	6만 가구(4.5)	1만 가구(11.6)	1만 가구(5.3)	1.3만 가구(3.8)																																			
	없음	128.1만 가구(96.5)	8만 가구(88.4)	18만 가구(94.7)	33.1만 가구(96.2)																																			
1년 중 돈이 없이 추운 겨울에 난방을 하지 못한 경험	있음	4.8만 가구(2.7)	3.4만 가구(13.4)	6.8만 가구(10.8)	6.8만 가구(7.2)																																			
	없음	173만 가구(97.3)	21.9만 가구(86.6)	55.7만 가구(89.2)	87.9만 가구(92.8)																																			
계		178만 가구	25만 가구	62만 가구	96만 가구																																			
<p>주: 1. 집세 밀린 경험은 주거 점유형태가 자가나 무상일 경우 비해당하므로 분석 제외 대상 2. 자녀 공교육기를 주지 못한 경험은 무자녀 혹은 미취학·대학원생 자녀인 경우 제외 대상 3. 건강보험 미납 경험은 1년 내내 의료급여 대상자 동일 경우 제외 대상 출처: 손병돈(2020), 월간 복지동향(255) 재인용.</p> <p>** 경제·생활문제로 인한 자살: ('14)2889명, ('15)3089명, ('16)3043명, ('17)3111명, ('18)3390명, 2018년 자살자 중 생활고 관련 자살비중 25.6% 차지(경찰청, 2019.통계연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가구의 비중* 증가로 가족 내 부양능력이 저하되는 상황에서 잠재적 부양 가능성을 근거로 부양의무를 강제하는 부양의무자 																																								

구 분	내 용
	<p>기준은 사적 부양 및 공적 부양의 공백을 야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고(헌법 제34조 제1항), 인간의 존엄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부양의무제 기준 전면 폐지 필요</p> <p>* 1인 가구 비중(%): 27.2('15) → 31.9('25) → 34.6('35) → 36.3('45) (통계청, 2016)</p>
공약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로 저소득 빈곤층의 수급권 보장

2

기초자치단체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확대

구 분	내 용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자활센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를 근거로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 상담,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 지도, 자활기업의 설립 운영지원 등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한 인프라로서 역할을 수행 ●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예산은 인건비와 기관운영비로 구성, 이 중 인건비 비중*이 높아 공공요금, 수용비 및 수수료, 임대료 등의 기본적인 기관운영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자활센터가 72.5%를 차지(247개소 중 179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자활센터 운영예산 비중_인건비 : 기관운영비 = 92 : 8, 인건비 비중 100% 지역자활센터 19개소(7.6%) 복지부 지침 준용 시 지역자활센터 규모별 운영비 내 인건비 비중: 최소형 97%, 기본형 92%, 표준형 98%, 확대형 96% ● 종사자의 시간외 수당 미지급 상황 발생 뿐만 아니라, 247개 지역자활센터 중 30개 지역자활센터는 종사자 호봉을 삭감, 135개 지역자활센터는 지침에 의한 정원(총 154명)을 채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일부 시·도 및 시·군·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대, 종사자 사기진작과 질 높고 안정적인 자활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현실화 필요
공약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자활센터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도 및 시·군·구 지자체 별도의 예산 마련 및 추가 지원 ● 기초자치단체 자활기금을 활용한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확대

3 저소득층 자립 강화를 위한 기초자치단체 자활지원 조례제정

구 분	내 용																
<p>현황 및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지자체, 지방자치단체 등 보장기관은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해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 마련(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및 제18조). ● 이를 실현하기 위한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이 필요한 바, 2020년 현재 광역지자체는 88.2%가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반면, 기초 지자체는 5.3%만이 제정·운영되고 있어 저소득층에 대한 자립지원서비스의 지역별 편차가 발생* <p style="text-align: center;">〈전국 자활관련 조례제정 현황〉 (단위: 개수,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구 분</th> <th style="width: 25%;">광역·특별시도(n=17)</th> <th style="width: 25%;">시·군·구(n=228)</th> <th style="width: 35%;">전체(n=245)</th> </tr> </thead> <tbody> <tr> <td>자활사업 지원조례</td> <td style="text-align: center;">15(88.2)¹⁾</td> <td style="text-align: center;">12(5.3)</td> <td style="text-align: center;">27(11.0)</td> </tr> <tr> <td>자활기금설치 및 운영조례</td> <td style="text-align: center;">6(35.3)</td> <td style="text-align: center;">145(63.6)</td> <td style="text-align: center;">151(61.6)</td> </tr> <tr> <td>자활지원협의체구성 및 운영조례</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14(6.1)</td> <td style="text-align: center;">14(5.7)</td> </tr> </tbody> </table> <p style="font-size: small;">주: 1) 전체 자치단체 중 조례제정 현황(광역·특별시도/시·군·구) 분포를 나타냄. 출처: 국가법령센터(2020.1.31.) 현행자치법규(http://www.law.go.kr) 자료인출, 분석</p> <p>* 성과평가 결과 자활사업관련 지원 조례가 제정된 지역자활센터가 우수한 그룹에 다수 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활사업 지원 활성화 및 저소득 취약계층의 효율적인 자활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자활사업 지원조례를 제정, 지역의 빈곤 문제 해결 및 지역복지 발전에 기여 필요 	구 분	광역·특별시도(n=17)	시·군·구(n=228)	전체(n=245)	자활사업 지원조례	15(88.2) ¹⁾	12(5.3)	27(11.0)	자활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6(35.3)	145(63.6)	151(61.6)	자활지원협의체구성 및 운영조례	-	14(6.1)	14(5.7)
구 분	광역·특별시도(n=17)	시·군·구(n=228)	전체(n=245)														
자활사업 지원조례	15(88.2) ¹⁾	12(5.3)	27(11.0)														
자활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6(35.3)	145(63.6)	151(61.6)														
자활지원협의체구성 및 운영조례	-	14(6.1)	14(5.7)														
<p>공약요구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자활사업 지원조례’ 제정 ● 자활사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 강화 및 지속가능한 자활사업 육성 지원을 위한 자활사업 우선 위탁 및 조달구매 시 우선 구매 관련 규정 마련 																

07

공약

사회복지 일반

- 1. 사회복지 전문성 유지를 위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의무대상 확대
- 2.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 전면 재검토
-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규정 법제화
- 4. 사회복지사 등의 임금심의위원회 설치

- 전 국가정위탁지원센터협의회
- 전국노숙인시설협회
- 전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연합회
-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
- 전국여성폭력방지상담원처우개선연대
-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 한국노인보호전문기관협의회
- 한국노인복지중앙회
-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 한국다문화가족건강가정지원센터협회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 한국사회복지관협회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한국시니어클럽협회
- 한국아동복지협회
-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
-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1 사회복지 전문성 유지를 위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의무대상 확대

구 분	내 용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 조제1항)임 ● '19년 11월말 현재 자격증 발급 현황은 110만을 넘어섰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질향상을 위한 법정 보수교육 대상자*는 5만여 명에 불과한 상태임 * 사회복지법인·시설 종사 사회복지사로 한정(이외 다른 직종 종사자 및 종사하지 않는 자는 교육 이수 의무 면제)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질향상'이 목적인 법정 보수교육임에도, 이수 의무가 없는 사회복지사 자격자가 절대다수를 차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수 의무가 없는 사회복지사 자격자들의 전문성 유지를 위한 장치가 매우 소극적임(희망자에 한해 이수 가능) - 법정 의무대상자(사회복지 시설 및 법인 종사 사회복지사) 5만여 명은 미이수시 과태료 부과하는 규제 존재 ● 보수교육 의무대상 범위 확대 및 미이수 사회복지사에 대한 채용 제한 입법 노력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08.29.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사회복지사업법」(제20대, 상임위 법안소위 상정) - '17.12.04.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사회복지사업법」(제20대, 상임위 법안소위 회부) - '19.07.24. 전재수의원 대표발의 「사회복지사업법」(제20대, 상임위 회부)
공약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대상 범위를 넓히고, 미이수자에 대한 자격을 규제하는 등 운영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해, 국가자격자 자질을 향상(법령 개정*)하여 국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제11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정지)과 제11조의4(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분류, 제13조(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 및 제58조(과태료) 개정 등)

구 분	내 용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p>〈<u>신 설</u>〉</p>	<p>제11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 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p> <p>1.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p> <p>2.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수 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p>
	제11조의3(사회복지사의 <u>자격취소 등</u>) (생 략)	제11조의4(사회복지사의 <u>자격취소</u>) (현행 제11조의3과 같음)
	제11조의4(유사명칭의 <u>사용금지</u>) (생 략)	제11조의5(유사명칭의 <u>사용금지</u>) (현행 제11조의4와 같음)
	<p>제13조(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p> <p>② (전문생략) 다만, <u>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u> (후문생략).</p> <p>③ <u>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법인 또는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u> (후문생략).</p> <p>④ (생 략)</p>	<p>제13조(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p> <p>② (전문생략) 다만, <u>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u> (후문생략).</p> <p>③ <u>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운영하는 자는 해당 법인, 시설, 기관 또는 단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u> (후문생략).</p> <p>④ (현행과 같음)</p>

구 분	내 용	
	현 행	개 정(안)
	<p data-bbox="507 443 628 477"><신 설></p> <p data-bbox="507 927 927 1106">⑤ 제2항에 따른 <u>교육의 기간·방법 및 내용</u>과 제4항에 따른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 data-bbox="507 1133 927 1312">제58조(과태료) ① (생 략) ② 제13조제2항 단서 및 제3항, <u>제11조의4</u>, 제18조제6항, (후문생략).</p>	<p data-bbox="954 443 1374 913">⑤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u>최근 2년 이상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2항 단서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u></p> <p data-bbox="954 927 1374 1106">⑥ 제2항에 따른 <u>보수교육의 대상·기간·내용·방법 및 절차</u>와 제4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 data-bbox="954 1133 1374 1312">제58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3조제2항 단서 및 제3항, <u>제11조의5</u>, 제18조제6항, (후문생략).</p>

2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 전면 재검토

구 분	내 용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4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지방분권 로드맵’에 따라 재정이양과 연계한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이 추진되었고, 2005년에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사업을 포함한 장애인복지서비스 분야의 핵심 사업 대부분이 지방으로 이양됨 ● 지방자치분권은 서비스 전달에서 최종 전달 조직의 역할을 강화하고, 서비스와 관련된 핵심적인 기능들이 이용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도록 하는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음 ● 사회복지서비스의 지방이양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복지서비스 욕구에 지방정부가 구체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논거에서 시행되었으나 기대했던 효과보다는 지역 간 서비스 편차가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음 ●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지방이양이 서비스 질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지방이양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있지만, 충족되지 못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째,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견인하고 지도할 수 있는 분명한 서비스 표준(care standard)이 마련되어야 하나, 권고 수준의 지침(장애인복지시설 사업 안내)만 발표하고 있고, 지방정부에 따라서는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있음 - 둘째,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고 서비스의 최소한의 요건들을 충족할 수 있도록 견제하는 감독 기능이 부재함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으로 이양된 사회복지사업의 현실은 지역간에 큰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거주 또는 근무하는 지역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질이나 노동환경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사회복지서비스는 전형적인 대인서비스로, 서비스 질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적자원과 제도적 지원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데, 지방정부의 지원 정도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음

구 분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컨대,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지역간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다른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역간 편차 사례도 추가할 수 있을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종사자 배치기준은 지역별로 상이하여 장애인 10명 기준 최소 3명(서울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전북, 경남)에서 최대 6명(제주)까지 큰 편차 발생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는 최저 73,000천원 ~ 최대 175,000천원으로 연간 1억 원 이상의 차이 발생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종사자 인건비(시설장 10호봉 기준)는 최저 39,294천원(대구시·부산시), 최대 54,520천원(전라남도)으로 연간 최대 15,226천원의 차이가 있음 ● 장애인주간보호서비스는 대인서비스로, 서비스 질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적자원의 질에 큰 영향을 받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 종사자 배치기준의 현격한 차이는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질의 차이를 보여줌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이용자 중 (최)중증 장애인 비율이 높아 타인의 도움을 필요한 장애인이 많아 종사자의 높은 직무 강도와 높은 이직률(평균 근속월수 45.6개월, 3.8년, SD = 47.27개월)로 이어짐. 종사자들의 이직률이 높다는 것은 시설에 경험이 많은 종사자가 적어지고, 서비스 질이 낮아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짐
공약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산출방식은 증가하는 복지서비스 욕구와 연동하여 조정 ● 지방이양된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통해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전국적인 차원의 지원과 관리가 필요한 분야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서비스 제공범위가 지방수준이고 서비스 내용에서도 지역특성을 반영해야 하는 서비스는 지방이양사업으로 재편 - 예컨대, 장애인주간보호시설과 같이 급속도의 공급량 확대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국고보조사업으로 운영 ● 각 지역별 사회복지서비스 실태 점검하고, 부족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맞춤형 지원확대를 통해 지역별 서비스 상향평준화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규정 법제화

구 분	내 용
<p>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표준화된 보수규정이 없어, 사회복지시설간, 직종간의 보수의 차이 발생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공무원보수 대통령령으로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제정하여 전국의 모든 지방공무원이 동일한 보수기준에 의하여 급여가 지급되고 있으며 보수인상도 국무회의 의결로 인상하고 있어 자치단체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고 있음 </div>
<p>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4,646개소 사회복지시설의 44,332명 시설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보조기준이 보건복지부에서 지침형식으로 매년 시달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 각 시설에 보조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사회복지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가 동일 사회복지시설 직종내에서도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이직율이 매년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및 이용자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연속성과 질의 저하를 초래하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음 ● 또한, 자치단체의 재정력에 따라 특별수당 지급의 차등이 심화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불만이 상당히 표출되고 있어 개선이 요망됨
<p>공약요구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보수체계와 봉급 수준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현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공무원이나 교육공무원과 같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보수 규정에 대한 법률 개정 필요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간의 보수체계를 통일함으로써 사회복지 시스템의 체계적 운영과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신분 안정성 유도 ● 사회복지사업법 제3장(사회복지시설) 제34조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보수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보수규정은 대통령령에 위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보수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정부 입법으로 발의 요망

4 사회복지사 등의 임금심의위원회 설치

구 분	내 용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조의3(사회복지사 등의 임금심의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수지침의 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임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둠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시설은 보건복지부 산하의 시설만이 아닌, 여성가족부 등 다양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부 장관이 타 부처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임금과 처우 등에 대해 행사하는 것은 월권임 - 보건복지부 장관만이 아닌 여성가족부 장관 등을 추가로 삽입하거나, 장관을 관할하는 국무총리로 하는 방안 등의 모색이 필요함 ※ 공약의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내용들이 구성되어 있음. 사회복지시설은 보건복지부 관할 시설만이 아닌 다양한 부처의 시설이 있는 만큼 용어 사용, 문장구성 등에 있어서 타부처의 사회복지시설이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고 주체적으로 설 수 있도록 신중함 필요
공약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조의3(사회복지사 등의 임금심의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수지침의 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을 관할하는 각 중앙부처의 장관은 사회복지사 등의 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둠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

